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第16回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5. 6. 21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

開會辭	李秉龍	1
I. 主題發表		3
1. 北韓의 對美平和協定 締結 戰略: 內容, 意圖 및 問題點	諸成鎬	5
2.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韓庸燮	80
II. 綜合討論		119
<附錄> 會議日程		138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이라는 주제로 제16회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발표자·사회자·토론자로 참여하여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休戰狀態를 平和狀態로 전환한다는 것은 남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남북한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南北 平和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무시하고 1974년 3월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1984년 1월 미국·한국과의 3자회담을 개최하여 南北 不可侵宣言 채택 및 미·북한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1994년 4월 28일에는 외교부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현 정전 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측 대표를 철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기구를 임의로 설치(94.5.24)하는 한편, 중국의 군정위 대표단을 소환(12.25)시키고,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를 철수(95.2.24)시키는 등 休戰協定 死文化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휴전협정 사문화전략은 휴전체제의 安定性을 위협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한 협상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의 「한국배제·대미 직접협상」戰略의 延長線上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休戰協定 死文化戰略과 對美 直接協商戰略을 병행·추진함으로써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만이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하는 등 對美 平和協定 締結戰略을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本 연구원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의 의도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高見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진지하게 高見을 교환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하나마 개회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5. 6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I. 主題 發表

- 司會: 李相禹(서강대 교수)
- 發表: 諸成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
- 내용, 의도 및 문제점 -
韓庸燮(국방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빈 면

北韓의 對美平和協定 締結 戰略:

內容, 意圖 및 問題點

諸成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 I. 序論
- II. 北韓의 「平和保障體系」의 概念과 特徵
- III. 平和協定 締結主張의 根據
- IV. 平和協定 提議의 意圖
- V. 北韓의 平和協定 締結主張의 問題點 分析
- VI. 韓國의 對應方向
- VII. 結論

I. 序 論

북한은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협상을 제의한 이래, 지금까지 軍事停戰協定을 사문화시키고 停戰機構(군

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들을 無力化시키는 행동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

북한은 停戰協定の 死文化·無實化전략에 입각하여 1994년 5월에는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라는 것을 설치하였고, 동년 12월 15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중국군 대표의 철수를 실현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무실화를 집요하게 기도하여 왔다. 그 결과 1993년 4월 체코 대표단의 철수에 이어 금년 2월 28일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폴란드 대표마저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정전기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대미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94년 말 주한미군 헬리콥터가 비무장지대 북한측 지역에 不時着한 事件을 계기로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1995년 1월 1일 발표한 黨報·軍報·青年報 共同社說,¹⁾ 2월 24일의 외교부 대변인 담화 발표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²⁾

1) 黨報는 「로동신문」, 軍報는 「조선인민군」, 青年報는 「로동청년」을 말한다.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 p. 2.

2) 그 후에도 북한은 1995년 2월 28일, 4월 19일에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경수로문제와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각종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3월 3일자 「로동신문」 논평, 3월 5일자 「민주노선」 논평, 3월 7일자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 1995년 4월 13일자 「로동신문」 논평, 1995년 5월 30일 조선중앙방송 보도 참조.

북한의 기본입장이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아서 平和協定 締結을 논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政治·軍事的인 문제로서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 平和體制 전환문제가 당면한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제의(특히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內容, 意圖와 問題點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北韓의 「平和保障體系」의 概念과 特徵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을 위한 협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평화보장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概念을 규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沿革과 變遷過程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의가 기존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어떠한 差異와 特徵을 보이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平和協定 締結主張의 變遷過程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30~4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었고, 다소의 변화를 보여 왔다. 변천과정을 대략 4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가. 1段階 (1962년~1974년)

1단계는 南北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한 시기로서 대략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條件으로 「북남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남 宣傳攻勢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³⁾ 이 당시 미군철수는 평화협정 체결의 前提條件이면서 동시에 目標라고 할 수 있었다.

북한의 남북평화협정 체결제의는 間歇的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

3) 이 연설은 당시 내각 수상인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題下에 행한 것이다. 동 연설에서 김일성은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북남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때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33;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Ⅱ輯: 2期 1次會議~3期 7次會議) (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1167.

자들에 의해 70년대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

나. 2段階 (1974년~1984년)

2단계는 북한이 남북평화협정에서 北·美平和協定 체결주장으로 當事者를 변경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한 시기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최초로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하여,⁴⁾ 북한은 기존의 북남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철회하고 그 대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여 평화지향 이미지 부각을 위한 宣傳攻勢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제30차 유엔총회(1975. 9)에 제출한 覺書에서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實質的 當事者」는 북한과 미국으로서, 양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이 제안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특징은 과거의 제안이 주한미군 철수조건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선 미군철수, 후 남북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이었는데 반해,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후 주

4) 미국과의 평화협정 내용으로 북한은 ①상호 불가침 서약 및 직접 무력 충돌 위험 제거, ②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조선 경외로부터 일체의 무기,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 중지), ③한국주둔 외국군(특히 미군)으로부터 유엔군 모자 제거 및 완전 철수, ④외국군에 의한 조선의 군사기지화 및 작전기지화 방지 등을 들고 있다.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第Ⅲ輯: 4期 1次會議~5期 7次會議)(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858 참조.

5) UN Document A/C. 1/1054, 24 September 1975, p. 12.

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表明한 점이라고 하겠다(「선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전략」). 즉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手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북한이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제의한 배경에는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한국에서 2만명의 주한미군 철수, 1971년 9월 25일 중·일 관계 정상화, 그리고 1972년 2월 21일 美·中 上海共同聲明 발표 등에 따른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1973년 1월 미국과 월맹간에 체결된 「베트남에 있어서의 전쟁종료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일명 파리협정)⁶⁾이 체결되고 곧 이어 駐越 美軍이 철수하기 시작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⁷⁾

다시 말하면 駐越 美軍 철수에 고무된 북한은 1974년 1월 18일자 박정희대통령의 南北 相互不可侵協定 체결제의⁸⁾를 거부하는 동시에, 파리협정에 따른 베트남 공산화과정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리협정 체결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1단계) → 「주월미군

6) 법적·형식적으로는 미국과 월맹(북베트남, 월남민주공화국) 외에도 남베트남(월남공화국)과 월남임시혁명정부(소위 베트콩)도 이 협정의 당사자로 되어 있다. 파리협정의 全文은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974*, Vol. 935, No. 13295 (1977), pp. 6~17 참조.

7)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제의에 앞서 1973년 6월 23일 「고려연방제」案을 발표하였다. 諸成鎬,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研究報告書 91-02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p. 10~11 참조.

8) 南北 相互不可侵協定 체결제의에 관해서는 國土統一院, 「南北對話 白書」 (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457~62 참조.

철수」(2단계) → 「남베트남정권 타도」(3단계) → 「베트남 공산화 통일」(4단계)이라는 赤化統一戰略에 입각하여 월맹이 추진한 1단계 수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3段階 (1984년~1991년)

3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초까지, 즉 南北高位級會談이 개최되고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단계는 북한이 「북남불가침선언, 북·미 평화협정」締結을 주장한 시기이다. 즉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서울 당국과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소위 3자회담 제의 서한)를 채택하였는데, 同 書翰을 통해 「북남불가침 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을 제의하였다. 3자회담 제안은 “우리(북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⁹⁾ 이 제안에서도 平和協定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手段으로 제시되어 북한의 「先 평화협정 체결, 後 주한미군 철수 전략」에 근본적인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 255; 統一院,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1卷 <1945~1987> (서울: 統一院, 1991), p. 319; 1984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 許談이 행한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할데 대하여」라는 보고에서도 北南不可侵 共同宣言 및 對美 平和協定 締結을 반복제의하였다.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第IV輯: 6期 1次會議~8期 4次會議) (서울: 國土統一院, 1988), p. 581 참조.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3자 회담 제의를 계기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 미군의 조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對美 宣傳攻勢 및 의회 차원의 人民外交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라. 4段階 (1991년~현재)

4단계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의 시기이다.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유엔과 북한간 非正常的 關係는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 청산의 일환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철수 등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¹⁰⁾ 이후 북한은 1993년 10월 5일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의 제48차 유엔總會 基調演說,¹¹⁾ 1993년 12월 24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訪北 歡迎宴會에서 김영남 외교부장의 만찬사,¹²⁾ 1994년 6월 3일 김영남 외교부장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¹³⁾ 등에서 現 停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 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였다.

10) 1991년 9월 18일 강석주 外交部 副部長의 기자회견 및 연형묵 總理의 유엔총회 연설 참조. 「朝鮮日報」, 1991년 9월 19일자, p. 3; 「韓國日報」, 1991년 10월 3일자, pp. 1, 3 참조.

11)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서울: 통일원, 1993.10), p. 54.

12)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서울: 통일원, 1993.12), pp. 73~74 참조.

13)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서울: 통일원, 1994.6), pp. 67~68, 157~60 참조.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동 합의서 제5조에 따라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른 평화체제 전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과 그에 입각하여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왕에 주장해 왔던 北南 不可侵宣言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고, 현재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북한 核問題가 국제사회의 最大 懸案의 하나로 부각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간에 3단계에 걸친 고위급회담과 실무접촉이 1993년 6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기간중에 북한은 1993년중에 있었던 對美 接觸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2차례 제의하여, 향후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미국과의 協商議題로 삼으려는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하였다.¹⁴⁾

북한은 1994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은 이미 빈종이장이 되었으므로 朝·美間 敵

14) 첫째는 1993년 7월 14일~19일간 제네바에서 3차례에 걸친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요구한 것을 말한다. 둘째는 북·미회담 북한측 대표인 姜錫柱 外交部 제1 부부장이 1993년 11월 12일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개선 문제의 「일괄타결」(a package deal)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안중에서 북한측은 핵투명성을 보장(IAEA 임시·일반사찰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해 북·미수교, 국가승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적대정책 해소를 요구한 것을 말한다. 民族統一研究院,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年例情勢分析報告書 94-01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48, 59~60 참조.

對關係를 解消하고 平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미국에 대해 제의하였다.¹⁵⁾

곧이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事前 整地作業 및 對南 政治·心理戰 次元에서 군사정전기구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즉 정전협정을 사문화·무실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북한측 군사정전위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고,¹⁶⁾ 1994년 12월 15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중국군 대표마저 완전 철수시켰다.¹⁷⁾

1994년 5월 24일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協商機構로서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것을 설치하여,¹⁸⁾

15)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원, 1994.4), pp. 116~17 참조.

16) 북한은 4월 28일 개최된 판문점 軍事停戰委員會 秘書長 接觸에서도 군사정전위의 일방적 철수방침을 통보하였다. 즉 군사정전위로부터 위원, 비서장, 부비서장, 기타 참모장교 등 북한측 요원 전원철수 및 유엔측 군사정전위의 불인정 입장을 통보하면서 군사정전위 대체 및 항구적 평화보장 체계수립문제 협의를 위한 미군측과의 판문점 직접접촉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中立國 監督委員會의 공산측 대표인 폴란드 대표단의 철수 등 정전기구를 무실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유엔군사령부측에 통보해 왔다. 4월 29일에는 板門店 共同警備區域(Joint Security Area: JSA)북측 지역에 철모와 개인화기로 무장한 병력을 40여명 배치함으로써 병력의 초과투입과 함께 武力示威를 감행하였고, 이어 4월 30일에는 북한 공군기들이 휴전선에 근접한 지역까지 남하하는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5월 6일 군사정전위 秘書長들간의 非公式 接觸에서 북한측 대표들이 군사정전위 표시인 黃色腕章을 착용하지 않고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원, 1994. 5), pp. 47, 82;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1호 (1994), p. 110.

17)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서울: 통일원, 1994.12), pp. 110~11 참조.

한국을 排除한 채 지금까지 계속 군사정전위원회의 테두리 밖에 서 미국과의 군사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양대 停戰機構의 다른 하나인 중립국 감독위원회 無力化를 집요하게 기도하여 왔다. 그 결과 1993년 4월 체코 대표단의 철수에 이어 금년 2월 28일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폴란드 대표마저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휴전 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기구는 사실상 麻痺되고 本然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북한은 정전협정의 死文化·無實化전략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무단침범하는 등 비무장지대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5월 3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를 성명을 통해 중감위 사무실 폐쇄, 유엔군측 군정위 및 중감위 요원 등의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 등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과의 平和協定 체결에 應하지 않을 경우 追加措置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편 금년 4월 이후 대북 경수로지원문제가 交着狀態에 빠지게 되자 북한은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북·미기본 합의문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미간에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북한은 지난 30~40여년 동안 그들의 對南政策의 중추를 이루었던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해 대북 경수로지원 협상(또는 현재의 交着

18)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서울: 통일원, 1994.5), pp. 82~83 참조;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개설 주체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이다.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열리는 북·미간 準高位級會談)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 波狀的인 宣傳攻勢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란?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과거 단지 평화협정 체결만을 제의한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미국에 대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兩者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用語上의 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태도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이 「평화보장체계」를 언급하고 있는 文脈만을 보면, 평화보장체계가 단순히 停戰機構를 代替할 새로운 平和保障機構인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¹⁹⁾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편협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평화보장체계」는 단지 북한이 이해하는 바의 평화

19)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정전기구는 평화보장체제로 각각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성명중에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사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원, 1994. 4), pp. 244~46 참조.

를 보장해 주는 기구(즉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기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 북한식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法制度 내지 體制를 總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²⁰⁾

이와 관련, 북한이 「평화보장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그와 유사한 용어로서 이미 「평화강령」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연형묵 총리는 基調演說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평화가 깃들어야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할 수 있으며, 겨레를 전쟁의 재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평화강령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우선적 지위에 놓고 해결하자는 것이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수시키자는 것입니다.²¹⁾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이 말하는 「平和綱領」의 실천적 과제는 ① 북·남 불가침선언 채택, ② 북·미 평화협정체결, ③ 북·남 군비축감(남

20)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말사전」에 의하면 體系라는 용어가 “개개의 것을 그 구성부분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것으로 통일하는 그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화보장체계」를 단순히 기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21)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52호 (서울: 통일원, 1991), pp. 40~41.

북한 군비축소), ④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비록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보장체계」와 「평화강령」간에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평화보장체계」는 이 「평화강령」의 延長線上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 「평화강령」에 북한의 韓半島 平和構想의 骨格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동안 북한의 평화구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1990년 말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간에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1992년 12월 19일 남북한이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發效되었다. 이는 분단 반세기 동안에 있어서 남북한 정부당국의 總理級 會談을 통해 힘들게 도출한 합의였다. 그 후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북한 核問題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1994년 10월 21일 북한 核問題와 북·미 관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한 북·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현재 이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대북 경수로지원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은 불가침에 관한 章으로서 과거 북한측이 1984년 이래 주장하여 온 「북남불가침선언」과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²³⁾을 절충한 것

22) 평화강령의 4개항 중 북남불가침선언(수단)과 남북한 군비축소(목표)는 대남차원의 강령, 북·미 평화협정체결(수단)과 주한미군 철수(목표)는 대미 차원의 강령으로서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평화강령」은 북남불가침선언과 대미 평화협정체결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보면 1984년의 3者會談 제의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23) 우리측은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

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不可侵關聯 조항들과 이들에 입각하여 채택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평화강령」의 1단계인 북남불가침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북과 남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있는 만큼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북한의 기본적인 평화구상인 「평화강령」의 4개 사항 중 북남불가침선언을 제외한 3개 사항, 즉 ①북·미 평화협정체결, ②남북한 군비감축, ③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對韓 核雨傘 제공 중단 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體制 및 法制度(각종의 협정을 포함)라고 할 수 있다.²⁵⁾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평화보장체계」

서」를 채택한 후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24)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19일자 보도; 동시에 이것은 1984년 1월 10일의 소위 「3자회담 서한」에서 제시된 기본구도, 즉 「북남불가침선언 채택과 대미 평화협정 체결」중 전자가 실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25) 1990년 5월 3일 북한이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이것은 1987년 7월 23일자 段階的 武力減縮提案과 1988년 11월 7일자 包括的 平和方案을 집대성한 것임)에 의하면, 군축을 위한 실천조치가 ① 북남신뢰조성, ②북남무력감축, ③외국무력 철수, ④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 제안중에는 최근 북한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이 동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3~4년내에 무력의 단계적 감축 실시, 평화협정 체결, 남북간 고위군사

수립을 위해 북한이 설치한 대표적인 기구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평화보장체계」를 1984년의 3차회담 서한에서 제시된 북남불가침선언과 대미 平和協定 체결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994년 5월 6일 조선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에 따라 북남군사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문제도 완전히 풀릴 수 있게 될 것이다.²⁶⁾

요컨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북남불가침합의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대미 평화협정체결과 북남불가침의 실천(북남불가침선언 자체는 아님)」 등을 制度的으로 지원하는 裝置·制度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⁷⁾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비무장지대내 중립국감시군 배치 등은 북한식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동신문」, 1990년 6월 2일자.

26) 이와 유사한 입장은 1994년 9월 9일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와 1994년 10월 21일 유엔총회 제49차 회의 제1위원회에서 북한대표가 행한 연설, 1995년 2월 24일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5년 2월 24일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는 “... 우리와 북남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남조선 당국이 분수없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7) 1994년 9월 19일자 「조선중앙방송」 보도도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의 당면과제는 평화강령의 제2단계인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기본합의문의 채택으로 북한과 미국이 이미 관계개선의 길로 접어든 만큼, 북한이 미국과의 平和協定을 체결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최근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미국과의 직접대화(직거래)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전략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平和攻勢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남북한간에 북남불가침선언이 이미 採擇·實現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對南關係에 있어서는 북남불가침선언의 目標인 南北間 軍縮을 擔保·保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실천적 조치에 주안점을 두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식 「평화보장체계」는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平和를 정착시키고 이를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보장메카니즘」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28)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 내지 해체시키고 그 기능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이관시키려고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1992년 1월 8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주최 신년 리셉션에서 북한측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이찬복 대좌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 설치시 동 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북남대화의 경험이 많은 군사정전위원회 종사자들이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발언은 1992년 2월 13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주최 리셉션에서 북한측에 의해 행해진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첫째, 군사정전위원회 해체를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내지 명분을 축적하는

3. 「平和保障體系」樹立提議의 特徵: 過去主張과의 比較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對美 平和協定 체결주장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이미 지난 약 30년 이상 동안 주장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몇가지 점에서 이전 시기의 주장과 差異가 있다.

첫째, 종래의 경우에는 平和協定 체결만을 제의하였으나,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하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평화이미지 내지 평화지향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장차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열릴 경우 協商議題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70년대 이후 북한은 駐韓美軍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내지는 同 사안을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못박았었는데, 최근 제의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남북대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북한의 제의와 주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過大評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조선반도 평화관」이나 과거의 대남·대미 협상행태를 보면 어느 시기에 접어들인 주장이 후에 재포장되어 다시 등장하였던 일이 非—非再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

동시에, 둘째,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남북한간의 軍縮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주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려는데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과거의 경우는 대체로 一過性의 선전적·선언적 차원의 주장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북한 제의의 특징은 단순히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및 대남 정치·심리전 차원에서 停戰協定과 停戰機構들을 사문화·무실화시키려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의 동향에서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제와 동시에 즉각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일방적 철수를 통고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립국 대표까지 철수토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정전협정체제를 현실적으로 무실화시키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넷째, 과거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북·미간에 對話通路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一方的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북한은 동협정 체결을 성사시킬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 결과 공허한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의 동향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또는 대북 경수로지원 문제)과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키는 등 과거와는 달리 그들 나름대로의 協商手段(내지 誘引策)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채택된 北·美 基本合意文에서 외교대표부의 교환·설치 및 관계개선에 따라 향후 대사급 외교관계까지 격상시킬 수 있는 合意를 도출해냄으로써 자신들의 제의·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⁹⁾

III. 平和協定 締結主張의 根據

최근 북한의 제의는 정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고 그 기능이 마비된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평화보장체계의 핵심인 平和協定 체결주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이 이해하는 「평화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北韓의 平和觀

북한의 平和觀은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는 공산주의식의 階級的 平和概念과 「부르조아평화주의」로 대별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김일성 저작선집과 정치사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김일성 저작선집 4권, 521페이지)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의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침략자들을 단매에 소멸할 수 있을 때 평화의 유지와 그 공고성은

29) 白珍鉉,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 問題點과 對策,” 「主要國際問題分析」, 1994. 10. 19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p. 6 참조.

담보된다. 평화를 전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관하여,” 31페이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되는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수이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 … 또한 평화를 유지한다는 간판 밑에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노예적 굴종을 설교하며, 전쟁공포증을 류포시키는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김일성 저작선집 3권」, 415페이지)³⁰⁾

부르조아평화주의의 반동적 본질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데 있다.

전쟁을 두려워 하는 부르조아평화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도 전쟁을 영원히 없애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정의의 전쟁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할 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한다. …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김일성 저작선집 4권」, 484페이지)³¹⁾

30) 이상은 「평화」의 정의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63.

31) 이상은 「부르조아평화주의」의 정의이다. 위의 책, pp. 482~483 참조.

이상에서 인용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침략과 전쟁은 帝國主義의 本性이므로 제국주의자들과는 (협상과 같이) 구결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평화를 전취할 수 있다.³²⁾

둘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의 핵심은 平和를 교란하는 핵심세력인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셋째, 부르쵸아평화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도 전쟁을 영원히 없애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正義의 戰爭(예컨대 조국해방전쟁)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국주의자들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상태하에서의 平和는 노예적 굴종의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와 같은 북한식 평화개념을 한반도에 대입시켜 보면 그들의 「조선반도 평화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남한(부르쵸아평화주의자들)은 북한을 압살·모해하는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동맹체제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하에서도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상태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사이비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자와의 투쟁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32) 이와 유사한 내용은 일찌기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p. 37~38 참조.

결국 북한이 이해하는 조선반도의 평과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관에 입각해서 북한이 제의하는 平和協定 締結 주장(또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제의)의 근거는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고 비정상적인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북한과 美國과의 平和協定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³³⁾ 이하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주

33)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의 辭典的 定義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조선말사전」에 의하면 평화협정은 “나라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관계와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225. 조선말사전의 이전 판에는 없었으나 1981년 판부터 「평화협정」 항목을 새롭게 추가된 것이 주목된다.

둘째,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나라들이나 또는 지역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관계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으로 되어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802. 같은 사전에 수록된 「평화조약」의 정의에서는 적용범위를 「나라들 사이」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나라들이나 또는 지역들사이」라는 표현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특수관계를 의식한 사전 개념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셋째, 「백과전서」에서는 평화협정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는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참조.

한편 북한이 사용하는 평화협정의 유사용어로는 평화조약과 강화조약이 있는데, 그 정의에 관해서는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109~10, 80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

장의 내용과 논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³⁴⁾

2. 平和協定 締結의 必要性

첫째, 북한은 한반도에서 시급히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 내지 필요성을 현 정전협정의 사문화 및 정전기구의 기능상실에서 찾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오늘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종이장으로 되고 군사 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⁵⁾ 이처럼 북한은 정전협정의 死文化 및 정전기구의 무력화 내지 기능상실을 근거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정전기구는 평화보장체제로 각각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의 死文化 및 정전기구의 기능 상실에 대해 북한은 그것이 전적으로 美國의 責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은 패트리엇 신형 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 (정전)협정의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 (각종) 부당한 처사로 하여 ...”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⁶⁾

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5 참조.

34)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와 「평화협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평화보장체계」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남불가침 실천이라는 법제도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고 그 실천을 보장하는 기구·체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후의 2者を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당면목표는 평화협정 체결이므로 이하에서는 「평화보장체계」와 「평화협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기로 한다.

35)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셋째, 북한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관련 사안이 북한과 미국을 敵對關係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북한)와 미국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³⁷⁾

북한은 核問題를 위시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미국간에 조속히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핵문제(최근 논의되는 대북 경수로지원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음)와 같이 직접 평화협정과 관련 없는 사안과 平和協定을 연계시키려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

3. 停戰機構 無力化措置의 正當化 論理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내지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事前整地作業으로 1953년 7월 7일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양대 군사정전기구들을 無力化시키는 한편, 정전협정의 핵심적 요소인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정전협정과 정전기구 기능을 체계

36)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이에 관련된 북한주장으로는 길재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선의 정당한 조치,” 「근로자」, 제7호 (1981), p. 56 참조.

37)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적으로 파괴·말살시켜 온 ... 계약일방인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거기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38)

1995년 3월 3일자 「로동신문」 논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뿔스카(폴란드) 대표단의 철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이 조성한 사태로 하여 우리가 「부득이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조치」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부속기구로서 군사인원과 작전물자의 반입과 관련한 감시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파기함으로써 그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 제반 사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뿔스카대표단을 철수시키게 만든 장본인도 미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³⁹⁾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 대표의 일방적 철수와 중국군 대표의 철수 실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체코 및 폴란드 대표의 강제철수 등을 自衛的 措置로 호도·정당화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38)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

39) 강철수, “미국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5년 3월 3일자, p. 6.

4. 平和協定の 當事者: 北韓과 美國

북한이 주장하는 平和協定の 당사자는 남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지 남북한간에 맺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이와 같은 평화협정 당사자개념은 韓國戰爭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북한은 한국전쟁을 미제국주의와 싸운 조국해방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성격과 관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전쟁 도발에 대해 正統政府인 평양정권이 미제국주의 압제하에 있던 「남조선」(미제의 식민지)의 해방을 위해 미제국주의와 투쟁한 自衛의 戰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요 자위의 전쟁으로 호도하면서 그들의 武力南侵을 은폐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한 무력사용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국해방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유엔군이라는 우산 아래 다른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여 한반도문제에 부당하게 介入(侵略)했고, 그 후 분단이 고착화됨에 따라 아직까지 조국해방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한국전쟁이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戰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둘째, 북한의 조국해방전쟁관은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그리고 다시 앞으로 체결될 平和協定の 當事者

40)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대해서는 조선로동당출판사,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한 당의 투쟁, 당대렬의 확대와 당의 조직사상적 강화(1950.6-1953.7),”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266~319 참조.

도 당연히 북한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일찍부터 이른바 「實質的 當事者論」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에 따르면 정전협정의 署名者는 유엔군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인데, 중국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하였고, 대부분의 유엔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이므로,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의 實質的 當事者라는 것이다.⁴¹⁾ 남한 정부는 美제국주의자의 괴뢰로서 自律性이 없기 때문에 북·미간의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모든 한반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현재 미군의 남한주둔을 미군이 남조선을 침략·강점하고 있다는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미국이 平和協定の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 무력에 대해 통수권을 거머쥐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고,”⁴²⁾ 대한민국이 국군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를 이유로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 1995년 3월 3일자 「로동신문」 논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미국이다.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 있는 전반적인 무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41)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 資料集」(第Ⅲ輯: 4期 1次會議~5期 7次會議), p. 858 참조.

42) 「조선중앙방송」, 1995년 3월 3일자 보도.

장악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의 당사자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도 없다.⁴³⁾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거로서 그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른 정전협정의 當事者 解釋과 함께 현재 韓半島에서의 武力實態(미군의 남한 주둔)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논거에 입각하여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괴뢰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괴뢰들은 거기에 끼어들 초보적인 권능도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⁴⁾ 즉 북한은 停戰協定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인 이상 평화협정 체결 내지 평화보장체계 수립도 마땅히 양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하며, 當事者 資格이 없는 한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남북한간에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로 남북한간에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한은 既合意한 문서에 따라 불가

43) 강철수, “미국은 리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p. 6.

44) 예컨대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19일자 및 1995년 3월 2일자 보도, 「로동신문」, 1995년 3월 3일자 논평 참조.

침을 성실하게 이행·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남북
한이 별도의 平和協定을 締結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IV. 平和協定 提議의 意圖

여기서는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는 구체적인 意
圖와 이를 추진하는 戰略戰術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意圖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배경과 의
도는 ①生存戰略, ②對南戰略, ③북·미간 協商戰略의 3가지 차원
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3가지 측면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또는 장·단기 목표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이와 같
은 3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 生存戰略

먼저 북한의 平和協定 체결주장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심한 외교적 고립, 통치이데올로기상의 위

협, 극심한 경제난, 권력승계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體制維持를 보장해 주는 안전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만들어 낸 안전판은 하나는 핵무기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 및 관계개선이다.

특히 탈냉전시대의 唯一超大強國이라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체제의 인정 및 존립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협력과 實利를 얻어 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방법은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한 무력불사용 및 불위협(핵무기불사용 및 불위협 포함)을 약속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와 같이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는 擔保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나. 對南戰略

최근 북한의 平和協定 체결주장은 종래의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45) 이와 관련, 1995년 5월 18일자 「로동신문」 논평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여기에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에서 공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략은 곧 연방제 통일전략인데, 지금 북한은 이 연방제 통일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障礙要因은 다름 아닌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겠는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미국과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평화협정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적대관계가 해소된다면 더이상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은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둘째, 주한미군의 대량감축 또는 완전 철수 실현, 셋째, 미국의 대한 핵우산 철거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넷째,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등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聯邦制 統一의 기반을 조성,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화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長期的·窮極的 目標 외에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가지고 남한을 배제한 채 직접 미국과의 협상을 추구하고, 또한 북·미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短·中期的으로도 對南戰略上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면에서 그들에게 효용이 있다고 믿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면서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이 문제의 쟁점화를 통해 韓·美關係를 離間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한·미 동맹관계(한·미 상호방위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은 평화협정 공세를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남북 간 군축 논의 개시, 주한미군의 조기 감축 유도, 주한 유엔군사령

부 해체, 한국 국방력의 상대적 약화를 통한 대남 군사우위 확보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평화협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평화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을 이간시키고, 나아가 統一戰略戰術상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다. 北·美間 協商戰略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북·미간 협상전략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核問題 해결을 위해 1993년 6월 이래 북한과 미국간에 개설된 대화채널을 심분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接觸機會를 가능한 한 확대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렛대(leverage)로써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첫째, 平和協定 체결문제는 한국의 정치·군사적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북·미간 문제화」를 실현,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즉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북·미간의 協商議題(agenda)化 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이간·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북·미간의 각종 대화채널, 특히 향후 열리게 될 외교적 수준의 고위급 내지 준고위급 회담 또는 고위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위시하여 여러 계기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론할 경우, 미국을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協商力을 제고할 수 있고 이러한 협상고리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최근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간에 準高位級(차관보급) 協商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대북 경수로지원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었고, 경수로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합의이행의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었다.⁴⁶⁾ 그러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북한 核問題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合意事項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새로운 교착국면이 전개될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미간의 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회담과정에서 북한은 경수로지원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의 우선적인 협의·해결(즉 協商議題의 변경·전환)을 요구하면서 協商力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해 최대한의 양보 내지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어 내려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⁴⁷⁾

46) 당초 북한은 북·미간 준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 이를 고리로 하여 협상외제의 전환을 시도, 당면한 경수로지원문제(북·미 기본 합의문 이행문제)와 평화협정을 連繫 내지 前提條件化함으로써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협상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동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7) 이와 같은 전망은 대북 경수로지원문제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에 근거를 둔 것이다.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目標日字인 금년 4월 21일까지 한·미가 한국형 경수로 제공에 대한 확고부동한

2. 推進戰略 및 戰術

북한이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견지하는 기본적인 전략전술이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南韓政府 排除戰略이다.⁴⁸⁾

북한은 이러한 남한정부 배제전략에 입각하여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구사하는 전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기구를 조직적으로 無力化시키고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는 등 비무장지대에서의 危機狀況을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

입장에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금년 4월 중순부터 協商議題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었다. 예컨대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북 경수로 협상이 가능하다”(4월 13일자 로동신문 논평), “북·미 기본합의문 대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수로제공을 비롯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도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4월 19일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안정과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4월 29일자 로동신문)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경수로 공급문제(북·미 기본합의문 이행문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 내지 전제조건화하려 한 바 있다.

- 48) 남한정부 배제전략은 미국, 남한당국, 남한주민 등 3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전략을 구사하는 3角 構圖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과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을 종합하면, 북한이 의도하는 對南戰略 目標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한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미국과 직접 해결함으로써 對南 優位와 正統性을 확보하고, 둘째, 對美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남한내 안보태세를 약화시킴으로써 남조선 해방의 기회를 도모하면서, 셋째, 統一戰線戰術 차원에서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북한의 당국과 남한의 비당국간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결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 또는 배제한 가운데 對美 直接協商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여러 계기를 통해 정전기구의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미에 의한 정전기구의 復元試圖가 無爲로 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이를 위해 북한은 한편으로 停戰協定體制 破壞의 책임을 계속해서 미국에 전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셋째, 미국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북·미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정전기구 무력화 및 정전협정 사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응당한 조치 또는 追加的 措置를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⁵⁰⁾ 또한 북한은 정전기구 무력화를 위해 필요·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

넷째, 미국이 평화협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소위 中間措置라는 것을 고안하여,⁵¹⁾ 「조선인민군 판

49) 1995년 2월 24일자 및 2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5년 3월 3일자 「로동신문」 및 1995년 3월 5일자 「민주조선」 논평 참조.

50) 1995년 2월 24일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1995년 4월 7일자 폴란드의 북한 외교관 감축조치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1995년 4월 19일자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계획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의 대미 비난담화, 1995년 5월 3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1995년 5월 12일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조치강행과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5년 5월 14일자 「로동신문」 논평 참조.

51) 북한은 1994년 12월 방북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 방문단에 게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의 中間段階措置를 검토

문점대표부」를 통해 미국과의 高位軍事會談 내지 將星級 接觸을 시도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제의하는 將星級 接觸은 북한이 북·미간의 외교수준의 대화채널(북·미간에 연락사무소가 교환·설치될 경우 주로 뉴욕과 평양 등의 지역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임) 외에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접 대화채널을 개설하자는 것으로서 이것은 수시로 平和協定 체결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 내지 투쟁공간(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한 政治鬭爭空間)을 확보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북·미간 고위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미국의 호응을 얻어 내는 한편,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政治的 位相에 큰 타격을 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 이 문제와 北·美 基本合意文 履行(특히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을 연계 내지 전제조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²⁾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東亞日報』, 1995년 1월 26일자, p. 1 참조; 이 중간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그것은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일 수도 있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북한측 대표와 미군 장성급 대표간의 북·미간 高位 軍事接觸채널 開設 및 定例化(군사정전위원회 틀밖의 변칙적 대화)일 수도 있고, 북·미간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南晚權 博士는 “북한이 노리는 中間措置의 性格은 미·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정치·군사문제 합의를 도출한 후 미·북간 정치·군사회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핵심의제로는 상호 불가침, 북한을 테러국가에서 제외, 유엔사 해체 및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T/S훈련 영구중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南晚權, “경수로문제에 평화협정 연계: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韓美離間·美軍撤收,” 『民族正論』, 1995년 6월호, p. 49.

V. 北韓의 平和協定 締結主張의 問題點 分析

1. 平和協定 締結 必要性 主張의 問題點

북한이 정전협정만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없기 때문에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 문제와 관련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이 갖는 의미를 재음미하고 최근 북한의 平和協定 체결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52) 북한은 한편으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북·미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다. 후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예컨대 1995년 5월 30일자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방송의 보도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대한 제의에 응해 나설 때에만 조·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관계가 조성될 것이며, 그것은 조선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 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평화협상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 내지 북·미 관계개선의 前提條件으로 삼을 뜻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의 연계가능성에 관해서는 제IV장 「平和協定 提議의 意圖와 問題點」 중 「北·美間 協商戰略」 참조.

먼저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法的 意味와 內容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남북관계는 停戰狀態(법적으로 전시의 연장)이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아니다.

둘째, 남북한은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南北 當事者 解決原則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은 평화상태를 이룩하기 전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의 維持·遵守 原則」이라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간에 전쟁상태 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회복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시까지 당분간 휴전체제를 지속한다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타나고 있는 남북한의 공통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法的 意味의 이해를 전제로 북한주장의 문제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의하면 군사정전협정의 종료시기는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되는 시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아직까지 남북한은 이 「평화상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 명백히 합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이미 그

러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평화상태」가 실현될 때까지 남북한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북한의 행동을 보면 그 정반대이다. 그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남북사이에는 아직 공고한 「평화상태」가 실현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둘째, 북한은 한편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停戰機構를 무력화시키고 군사분계선을 무단침범하는 등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兩面戰術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의 공산군측 대표를 모두 철수시키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 강제철수에 이어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관리 및 평화유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북한이 현재 停戰協定을 성실하게 이행·준수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정전협정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을 북한측이 행동으로써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북한은 平和協定 체결을 말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성실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法論理的으로 보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 위에서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위반하는 기초 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려는 기도를 묵인한 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그러한 협정의 명칭이 무엇이든 또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粉飾되든 불문하고, 동 협정의 실효성은 보장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그러한 협정이 잘 준수되리라고 신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제2의 停戰協定化할 위험마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전협정체제의 성실한 이행·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停戰機構의 正常的 稼動을 통해 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2. 當事者問題: 實質的 當事者論의 問題點

가. 實質的 當事者論의 基本的 問題點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實質的 當事者論」이라는 것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논거에 입각하여 한국전쟁(또한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고 주장하고, 平和協定도 이 양자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당사자론은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실질적 당사자론」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비정상적 이론으로서

국제법상의 근거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개념은 본래 法的 概念인 바, 평화체제 전환은 마땅히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간에 논의되고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法理的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⁵³⁾

둘째, 설령 「실질적 당사자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南北韓이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쟁은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시작된 것이다. 즉 북한이 처음 공격을 한 대상은 엄연히 대한민국이며 남북한이 주된 交戰當事國이었고, 한반도가 주된 전쟁터였으며 한국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역시 남북한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전쟁의 주된 당사자,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남북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⁵⁴⁾ 따라서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국, 주된 피해자인 남북한이 당연히 平和體制 전환문제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북한과 미국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3) 물론 이것은 平和協定の 當事者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국한된다든가 또는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국이 평화보장국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國際慣行도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金明基, 「分斷韓國의 平和保障論」(서울: 法志社, 1988), pp. 102~106 참조.

54) 남북한은 한국전쟁의 원인과 이해당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主人國家(host country)이며, 동시에 韓國戰爭의 주된 交戰國(principal belligerent)이었다. Byung-Hwa Lyou,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umber 2-1986(73) (Maryland: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6), pp. 54~56 참조.

셋째, 북한의 實質的 當事者論은 소위 조국해방전쟁관과 대한민국이 美帝의 식민지라는 대남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적인 正統性있는 정부라는 주장에 호응해 주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본질적으로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으로 둔갑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名分論上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唯一合法政府라는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⁵⁵⁾의 정신에 비추어 法理的으로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實質的 當事者論은 일반국제법에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주장이며,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 停戰協定 署名者의 國籍과 當事者의 混同

북한은 「實質的 當事者論」에 입각하여 정전협정의 서명자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美國人이라는 사실을 들어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論理를 따르면 만일 유엔군사령관이 영국인으로 보임되면 영국이, 또는 캐나다인으로 보임되면 캐나다가 각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5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of the 3rd Session, Part I, 1948, 1st Committee* (Paris: Palais de Chaillot, 1948), p. 290.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논리구성은 法理的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회원국을 구속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한국전쟁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과 被侵對象인 대한민국을 원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56)

그러나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1950년 당시 유엔체제하에서는 유엔이 常備軍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直接 어느 나라의 군인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고, 단지 어느 회원국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하도록 勸告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57)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보리는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S/1588)를 채택하여, 58) 유엔통합군사령관의 임명을

56) 실제로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무력남침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결의(S/1501)를 채택하여 즉각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회원국들이 북한을 원조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불응하자 안보리는 1950년 6월 27일 다시 결의(S/1511)를 채택하여 회원국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원조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동 결의에 따라 16개 회원국들이 한국전쟁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57)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 18.

58) 유엔統合軍司令部의 설치를 권고한 1950년 7월 7일자 유엔안보리 결의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武力攻撃을 가한 것은 평화의 파괴가 됨을 결정하며 유엔회원국이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동 지역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勸告하고

1. 대한민국을 원조하여 무력침공에 대하여 이를 방위함으로써 동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및 6월 27일의 결의에 대하여 유엔 회원국 政府 및 國民들이 보낸 신속하고 강

미국에게 勸告하였다.⁵⁹⁾ 이러한 委任에 따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당시 東京에 주재하던 맥아더(D. MacArthur) 極東軍司令官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⁶⁰⁾

-
- 력한 지원을 환영하며,
 - 2.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유엔에 보내 왔음을 유의하고,
 - 3. 전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如斯한 군대와 기타 원조를 美國管轄下의 統合司令部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 4. 미국이 동 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며,
 - 5. 본 통합사령부는 그의 裁量에 의하여 作戰中에 諸參戰國의 國旗와 함께 國際聯合旗를 사용할 것을 승인하며,
 - 6.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統合司令部 指揮下에 취한 활동에 관하여 適宜한 報告書를 提出하도록 요청한다.

59)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 暫定的으로 유엔통합군사령부(The Unified Command)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미국 국내법상의 절차를 밟아 1950년 7월 25일 유엔군사령부(The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으로 正式 發足하였다. Bailey, *The Korean Armistice*, p. 18; 안보리가 직접 어느 특정 국가의 국민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회원국도 자의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거나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어느 회원국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등 유엔의 기관으로부터의 受權이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안보리가 어느 1회원국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도록 勸告하는 행위에는 법인격을 갖는 국제법주체로서 유엔 자신이 갖는 고유한 권한(유엔 名義의 統合司令部 設置權, 유엔旗 使用權)을 미국에 授權(權限委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權限委任(法的 根據)에 입각하여 안보리는 자신의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와 의 관계에 있어서 報告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 보고를 접수하여 審議하는 등 간접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統制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군사령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며, 수시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정전기구 무력화(특히 1995년 2월 28일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강제축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신문」, 1995년 3월 3일자, p. 2.

60) L.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nited State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 120.

이처럼 유엔군사령관이 미군장성으로 보임된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그는 미국(일 회원국)을 대표하여 또는 미국의 一機關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의 집행기관(법리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을 위해(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활동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⁶¹⁾

정전협정 체결도 마찬가지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군사령부의 長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에 입각하여 정전협정을 교섭·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署名者(署名機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군사령부나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다.⁶²⁾

요컨대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근거로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 署名者(signatory)의 國籍問題와 그가 행한 법률행위가 귀속되는 當事者(party)問題를 혼동한 것이라 하겠다.

61) 유엔헌장 제29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2)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체결권에 관해서는 金明基, “韓國軍事停戰協定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25권 1/2호 합병호 (1980), pp. 64~65 참조; 한편 署名當事者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가 있으나, 국제법상 그러한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混同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 平和協定 當事者의 檢討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소위 비정상적인 「實質的 當事者論」으로부터 연역되어서는 안된다. 평화체제 전환방안을 모색할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평화협정의 체결시 정전협정 당사자의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로 정전협정의 우리측 당사자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법상 停戰協定の 當事者는 (1)한국과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決議(S/1511)에 입각하여 참전한 참전 16개국(聯合軍理論)이라는 입장과 (2)유엔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입장, (3)한국과 유엔(한국의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등의 역사적 사실 및 조약법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입장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정전협정의 一方當事者를 한국과 참전 16개국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聯合軍을 구성하여 전투행위를 수행한 경우 통상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은 연합군에 소속한 전 교전당사국 군대를 대표하여 정전협정(또는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연합군사령관은 정전협정 署名者에 지나지 않으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전 교전당사국이며, 그 효력도 전 교전당사국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한국전쟁에 대입시키면, 유엔군사령관은 參戰國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일 뿐, 그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韓國戰爭에 참가한 모든 交戰國들이다. 유엔군사령관이 단지 한국과 16개 참전국을 대리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였으므로 한국은 참전 16개국과 함께 엄연히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라는 것이다. 聯合軍理論에 입각하여 한국도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라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國際法學界의 通說이라 할 수 있다.⁶³⁾

이 경우에는 미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미국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북·미 평화협정의 효력(양국간의 전쟁종결 및 평화상태로의 전환)은 북한과 미국, 양자에게만 미칠 뿐이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그 결과 북·미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그리고 참전 15개국과 북한간에는 여전히 停戰狀態(전시의 연장)가 지속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현 정전협정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한반도에서의 불안한 정전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러한 平和協定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구축에 아

63)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성은 한국이 1950년 8월 14일 韓國軍 作戰指揮權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여기에는 당연히 정전협정 체결권이 포함된다)을 유엔군사령관에게 移讓한 것과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을 위해 위임서명한 것에서 인정된다고 한다. 裴載湜, “南·北韓의 UN加入과 法的 問題,” 『韓國統一政策研究論叢』, 第2卷 (1993), p. 19; 柳炳華, “韓國統一에 관련된 몇가지 國際法的 問題,” 『國際法學會論叢』, 第33권 2호 (1988), pp. 8~10; 李長熙, “韓國 停戰協定の 平和體制 轉換을 위한 法制度的 方案,” 李長熙 編著, 『21世紀를 대비한 韓國의 當面課題: 改革, 環境 그리고 統一』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p. 197; 白珍鉉, “休戰協定體制的 代替에 관한 小考,” 『統一問題研究』, 第3卷 4號 (1991), pp. 62~63; 『內外通信』, “대미평화협정 공세 강화배경,” 週刊版, 第943호(1995. 3. 9), p. A2 참조.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북한이 유독 미국과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불순한 目的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견해에 따르면 설령 북·미 平和協定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정전협정체제가 존속(따라서 양자는 병존)하며, 전자가 후자를 법적으로 代替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된다.

둘째,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를 유엔이라고 보고, 한국의 정전협정에 대한 直接當事者性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이는 조약법이론에 입각하여 조약(정전협정) 서명자와 법인격을 갖는 조약당사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국전쟁에서 聯合軍理論의 적용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主交戰當事者인 한국의 경우, (1)한국이 정전협정 署名에 완강히 반대한 사실과 (2)유엔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대표(대리)하여'(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라는 顯名이 없었음을 들어 한국은 정전협정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⁶⁴⁾ 다만 한국은 국군 작전지휘권의 유엔군사령부 이양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함으로써 정전협정의 間接的인 適用對象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대로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64) 金明基,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pp. 58~60; 한편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정전협정 체결시 그것을 반대하였고, 또 군사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1994년 5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참조.

경우, 첫째의 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엔군사령관은 어디까지나 停戰協定の 서명자일 뿐이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법인격을 갖는 국제법주체인 유엔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 이 입장의 결론이다.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미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이 當事者라는 북한의 주장은 역시 법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미국만을 끌어들이는 북·미 평화협정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를 한국과 유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첫째의 입장과 둘째 입장의 折衷的인 見解로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聯合軍을 형성하였다(이 점에서 한국군과 참전 16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첫째 견해와 차이가 있다)는 전제위에 입각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먼저 첫째 견해인 聯合軍理論이 2차대전과 한국전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서 동 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補助機關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⁶⁵⁾

동시에 이 견해는 ①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한국이 반대한 사실(앞에서 본 둘째 견해는 이 사실에서 한국이 정전협정에 구속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려하는 羈束的 同意 意思가 없었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과 ②한국이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공한에 의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가운데 유엔군사령관이 서명자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消極的으로

65)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p. 124.

解釋하여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그러한 비판의 내용 및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군사·경제 원조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停戰協定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6)

둘째, 유엔군사령관의 한국을 위한 현명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

66) 한국정부가 처음 정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 정전에 同意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 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은 Robertson 次官補를 大統領 特使로 한국에 파견, 2주간이나 한국정부를 설득한 결과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경제·군사원조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정전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53년 7월 11일자 韓·美 共同聲明,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7월 24일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1953년 7월 2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확인되고 있다. 柳炳華, “韓國統一에 관련된 몇가지 國際法的 問題,” p. 9 참조. 이와 관련 國防情報本部 刊, 「軍事停戰委員會 便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만 2개월 앞두고 1953년 5월 27일 한국군 수석대표 최덕신 소장이 포로교환문제에 관한 유엔군측의 대북한 제안내용이 한국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엔군측 제안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한국군 대표는 停戰會談에 일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문을 당시의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헤리스 중장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군 대표의 적극적 참여는 회담의 최종단계에서 消極的 參與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指示에 따라 1953년 6월 1일 한국군 대표단은 최덕신 소장을 수석으로 하고, 이호 육군준장, 김일병 해군준장, 김창규 공군준장 등이 각군 대표로 보강되고, 대령으로 진급한 이수영을 연락장교로 하여 문산의 유엔군 기지에 復歸하였다. 그리고 비록 한국군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연락장교와 최덕신 소장은 정전협정 서명시 유엔군 총사령관의 확인서명장소(문산극장)에 참전 16개국 대표들과 함께 배석하였다.” 國防情報本部, 「軍事停戰委員會 便覽」 (서울: 國防情報本部, 1986), pp. 151~152. 이와 같이 정전협정 교섭과정에서 한국군 대표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참석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순전히 교섭과정에서 현안을 둘러싼 交涉單位體 어느 일방의 내부문제의 표출이었을 뿐 쌍방 교섭단위체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것이 韓國의 停戰協定 當事者性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그러나 정전협정 序言(前文)에서는 “...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충돌의 당사자임에 틀림없고, 정전협정의 일방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에서의 교전국인 대한민국을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동시에 그 適用對象으로 삼으려는 默示的인 意思(즉 한국과 유엔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하려 한 의도)가 표시되고 있다. 즉 한국은 主交戰國이며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한 기타의 군대는 어디까지나 支援軍이라는 점과 정전협정의 前文에서 표시된 동 협정의 목적과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유엔군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성을 부인하려 한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同意와 保障이 있어야 정전협정에 서명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로버트슨 특사와 停戰協定에 관해 합의하고 난 후 우리측 교섭 실무대표인 해리슨이 1953년 7월 12일 공산측 대표인 남일에게 한국의 정전 동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通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볼 때 한국이 정전협정에 구속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려 하는 의사(羈束的 同意 意思)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정전협정의 追後慣行(subsequent practice)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고자 의도한 사실의 客觀的 證據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⁶⁷⁾ 이상

의 점에 비추어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정전협정 당사자를 한국과 유엔으로 볼 경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단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군출신의 유엔군사령관도 미국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機關 資格에서 유엔과 함께 주교전국이며 전쟁이 발발한 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⁶⁷⁾

전술한 諸見解에 비추어 볼 때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미군 4성장군인 유엔군사령관이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당사자라고 하는 주장이나, 한국대표가 서명자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모두 條約署名者와 條約當事者

67) 정전협정에 관한 追後慣行으로부터 다음 몇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전협정 체결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전까지 동 협정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唯一한 法的 文書였으며, 한국은 동 협정의 적용을 받아 왔고 북한도 이를 默示的으로 존중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정전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 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협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항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이는 한국이 협정 당사자로 협정에 구속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셋째, 1991년 3월 25일 한국군 將星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 지난 40여년간 한국군 대표 1명이 동위원회의 유엔군측 대표로 참가하여 왔으나, 이를 문제시 삼지 않았는 바,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의 당사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白珍鉉, “休戰協定體制의 代替에 관한 小考,” 『統一問題研究』, 제3권 4호 (1991), pp. 64~65; 諸成鎬,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p. 119.

68) 한국전쟁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宣傳布告를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는 사실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를 혼동하는 것으로서 법리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이상의 어느 경우이든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반드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國際慣行과 先例임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직접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협정 내지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이룩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구축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결국 우리 정부는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南北韓이 먼저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그 이후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원하에 한반도 평화를 보장(추진·지지·보장 등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對美 平和協定 締結 主張의 違法性: 南北基本合意書 違反

첫째, 북한의 對美 平和協定 체결 주장은 한국의 실체를 부정하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조국해방전쟁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남북평화협정 체결의사를 표명할 때만이 비로소 남북한간에 진정한 實體認定 및 平和共存 意志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한 평화체제 전환 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平和體制로의 전환을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9조에 대한 위반이다. 남북한은 마땅히 한반도 평화의 直接當事者로서 정부당국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불가피하게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미국만이 협의·해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國家主權과 內部問題에 간섭하는 것이 된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자연히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의 軍事安保問題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군사동맹관계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한·미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북한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한국의 이와 같은 對外的 事項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강요하려 할 경우 우리의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또한 우리 內部問題(특히 대외관계사항)를 간섭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 및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6조의 違反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한반도 平和體制 전환문제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마땅히 남북한간에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남북한이 7천만 민족 구성원 앞에서 엄숙히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실천할 때만이 비로소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駐韓美軍과 作戰指揮權 是非의 問題點

주한미군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감축, 한국군에 대한 作戰統制權 반환문제 등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재조정문제로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바에 따라 추진될 사항이다. 주한미군 철수나 작전통제권 반환시점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한국의 國家主權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북한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이를 시비한다면 우리 內部問題(내부문제중 특히 對外關係事項)에 대한 부당한 干涉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을 근거로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문제를 시비하고 있다. 즉 한국이 현재 자기 무력에 대한 統帥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을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사실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⁶⁹⁾

그러나 양자간에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러한 연계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대통령이 作戰指揮權 移讓公翰(public letter)에 의거하여 유엔군사령관에 이양했던 포괄적인 國軍 作戰指揮權(command authority)은 더이상 유엔군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있지 않다. 즉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국군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해 作戰統制權(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으로 축소되었고, 그러한 작전

69) 1995년 2월 24일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참조.

통제권도 1978년 11월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합의된 「軍事委員會 및 韓·美聯合軍司令部에 대한 權限委任事項」(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ombined Forces)에 의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재이양되어 있는 상태이다.⁷⁰⁾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던 작전통제권도 여러 계기에 걸쳐 조금씩 환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戰時作戰統制權을 제외한 平時의 모든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수되어 있다.⁷¹⁾ 요컨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1950년 당시 우리 정부가 포괄적으로 이양했던 作戰指揮權이 아니며, 그마저도 작년 12월 1일자로 平時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이제 한·미연합사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美國에 대해 작전지휘권 또는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1950년 당시 절차상 유엔의 기관인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法理的으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國際法人格을 가진 유엔에 이양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에 대해 戰時作戰統制權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어디까지나 한·미양국의 合意에 의해 설치된 共同防衛機構이지 이 기구는 미국의 1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實

70) 이 권한위임사항은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되었다. 諸成鎬, “韓國軍 作戰權과 그 還元問題,” 國土統一院, 「軍縮 및 軍備統制에 關한 研究」(서울: 國土統一院, 1989), pp. 252~263 참조.

71) 「서울신문」, 1994년 12월 1일자, p. 1 참조.

質的」 또는 「事實上」이라는 유보를 달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法理的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⁷²⁾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한국의 전반적 무력을 틀어 쥐고 있고 한국은 자기 무력에 대한 統帥權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북한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駐韓美軍이 존재하는 한 남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역시 국제법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작전지휘권에 관한 한 북한이 한국을 시비할 입장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의 경우에도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1950년 12월 중국인민지원군에 作戰指揮權을 넘겨 줌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도 작전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⁷³⁾ 즉 북한도 독자적으로 한국전쟁을 수행한 主體가 아니

72)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현재 미군 4성장군으로 보임되어 있으나, 그가 미군으로 補任된 것은 어디까지나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로서 한·미연합군사령부(또는 사령관)가 미국의 1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라는 한·미연합방위기구의 長으로서의 法的地位를 향유하며 그가 미국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諸成鎬, “韓國軍 作戰權과 그 還元問題,” p. 297.

73) 1950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은 中國人民支援軍 總司令 팽덕희에게 김일성과 회담하여 中·朝兩軍聯合司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팽덕희는 12월 7일 김일성과 회담하여 수일 내에 모든 작전과 전선의 일체 활동을 지휘할 중·조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서 북한정부는 後方動員, 訓練, 軍政警備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합사 아래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와 조선인민군 참모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팽덕희가 聯合司 司令員 겸 政治委員을 맡기로 하였다. 연합사 부사령원으로는 강건의 사망 후 1군단장에서 인민군 총참모장이 된 金雄, 부정치위원으로는 전쟁 직후부터 심양에 파견되어 중국인민지원군 사업을 돕고 있던 내무상 박일우가 임명되었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정치부

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던 사실이나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현재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시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그들 특유의 대남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惡意的인 宣傳攻勢라고 할 수 밖에 없다.

5. 軍事停戰機構 無力化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設置의 違法性

가. 停戰機構 無力化措置의 違法性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측 대표의 일방적 철수,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의 강압적 축출 등 停戰機構를 무력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당사자 일방이 정전기구에서 철수했다고 해서 또는 그것의 無力化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조치로 인해 군사정전위원회 등 정전기구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 또는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的 文書로서의 정전협정이

주임으로 이 일에 관여했던 杜平의 회고에 따르면 中·朝兩軍聯合司의 결성은 對外的으로 秘密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杜平, 「在支援軍總部」, 제2판(北京: 解放軍出版社, 1991), p. 142,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199에서 재인용. 결국 중·조양군연합사의 구성으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의 작전지휘권을 중국측에 이양했던 것이다.

당연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 秘書長 接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판문점 直通線(군사정전위원회 공동일직 장교간 直通電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⁷⁴⁾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군사정전위원회 철수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엄연히 지금도 有效하다고 하겠다.⁷⁵⁾

북한이 停戰協定の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 정전기구 무력화는 정

74) 이것은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측 秘書長의 口頭說明 내용이다. 「東亞日報」, 1994년 5월 3일자, pp. 1, 3; 「朝鮮日報」, 1994년 5월 3일자, p. 1 참조.

75) 1969년 채택된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에 따라 북한은 정전협정 타방 당사자의 義務違反을 이유로 정전협정을 停止 또는 終了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론상 몇가지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한국군 또는 유엔군측이 북한의 정전협정 정지 또는 종료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정전협정을 重大하게 違反(grave breach, material breach)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정전협정 정지 또는 종료를 정당화할 수 없는 단지 경미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둘째, 만일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한국군 또는 유엔군측의 정전협정 위반은 북한이 이미 과거에 정전협정을 重大하게 위반한 데 대해 그러한 위반에 상응하는 복수(reprisal)에 해당하는 것인가? 셋째, 1994년 4월 28일자 북한 外交部 聲明은 정전협정의 정지 또는 종료를 의도한 法律行爲(또는 법적 문서)인가, 즉 동 성명에 정전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키려는 意思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북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대미 평화보장 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의한 政治的 宣言(정책표명으로서의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넷째, 북한이 북한측 대표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철수시킨 것은 정전협정 全部에 대한 施行停止 또는 終了措置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시행정지를 의미하는가? 이 중에서 특히 넷째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에 관해서는 金明基, 「北韓의 軍事停戰委員會에서의 撤收와 國際法」, 「北韓學報」, 제18집 (1994), pp. 109~137 참조. 그러나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정전협정 유지·준수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북한의 철수행위로부터 정전협정을 일부 시행정지 또는 종료할 의사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전협정 위반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전기구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것이고 양자는 不可分의 一體를 이루고 있는 바, 정전협정은 유효하다고 하면서(또는 정전협정의 준수의를 인정하면서) 정전기구에의 참여를 부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정전협정의 有效性 또는 遵守意思를 밝히는 한, 무조건 즉각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포함한 정전기구를 正常化시킬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⁷⁶⁾ 따라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제의로 현재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호도할 수는 없다.

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設置의 違法性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는 停戰協定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기구는 停戰協定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등 그 어느 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설치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라는 것은 하등의 法的 根據도 찾을 수 없는 유명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측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군사정전위원회를

76) 이와 관련, 북한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를 통해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이 회담에서의 協議事項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中立國監督委員會의 權能提高 對策 및 비무장지대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중립국감시군 조직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은 북한이 이러한 입장으로 돌아가 남북한이 마주 앉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하는 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설치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停戰協定 당사자들이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동 기구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합법적인 軍事代表部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전협정 제61항에 의하면 본 협정의 수정 및 증보는 반드시 쌍방 사령관의 상호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設置問題에 관해 유엔군사령관과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다,

정전협정 제62항은 이 협정이 쌍방 당사자간에 修正·增補되거나 또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해 명백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도 남북사이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 停戰協定을 유지·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조치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설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停戰協定 維持·遵守義務의 명백한 違反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설치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6. 平和協定과 기타 문제와의 連繫可能性과 問題點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한·미가 한국형 경수로 제공에 대한 확고부동한 입장에서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協商議題를 경수로지원문제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을 보인 바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경수로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조·미 적대관계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경수로협상 분위기를 조성론의 명분하에 「先 平和협정 체결, 後 경수로지원문제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와 平和협정 체결문제는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로서 양자를 連繫 내지 平和협정을 前提條件化하려는 북한의 기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고 하겠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북 경수로지원은 기본적으로 작년 10월 21일자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미 기본합의문은 북한 核問題와 미·북한 관계개선문제를 병행추진하는 차원에서 일괄타결방식으로 합의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同 合意文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각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의무)을 매단계마다 성실하게 이행·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기본합의문의 그 어느 곳에도 平和協定 체결문제는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과정에서 平和협정 체결을 거론할 경우 이는 동 기본합의문에 없는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동 합의문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法理上으로 볼 때에도 한반도 平和체제 전환문제가 북한 핵문제나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문제(특히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이 두가지 문제는 發生原因, 性格, 當事者가 다른 문제로서 북·미 기본합의문

의 이행에 있어서 전자를 연계 내지 전제조건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77) 전자는 1953년의 정전협정체제를 공고한 平和體制로 전환하고 이를 보장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당사자간에 논의할 문제이다. 이에 반해 북한 核問題는 본래 범세계적인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작년 10월 21일 북·미 기본합의문이 타결되게 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는 이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평화협정문제가 북·미 고위급회담의 의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한국전쟁의 性格, 전쟁의 原因糾明 및 責任問題, 賠償 및 補償問題,78) 영토관할권문제 등을 미국측에 제기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결국 지리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북 경수로지원문제나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요원해 질 것이다.

77) 특히 當事者와 관련, 평화체제 전환문제나 경수로지원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 공히 主된 當事者이고 미국이 關聯當事者라는 점은 일치하나, 전자에 있어서는 참전 15개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능성, 후자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기타 서방국가들의 KEDO 참여가능성(중국은 아직까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78) 일·북한 수교교섭과정에서의 북한의 행태가 보여 주듯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대한 전후배상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I. 韓國의 對應方向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 북한은 平和協定이라는 말이 주는 상징성과 평화지향 이미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난 30~40년 동안 계속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전까지) 停戰協定 維持라는 입장으로 대응하여 왔다.⁷⁹⁾

이러한 입장의 대립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을 노정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반면에, 한국은 準戰時體制 하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정전협정 유지는 수세적·수구적인 입장이므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까지 말한다. 위장평화공세 차원의 평화협정 체결제의가 統一戰線 구축차원의 연방제통일방안 제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효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지금 우리는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對北戰略의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의 선전공세에 말려들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제의 또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제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79) 우리 정부는 1974년 1월 18일 북한에 南北 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提議한 적이 있으나, 이 제의에서도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정전협정 효력 존속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유지입장에는 차이가 없다.

필자는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대한 대응을 첫째, 향후 北韓 核問題 해결의 진전에 따라 미·북한 관계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정전협정체제의 전환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인가 하는 차원, 둘째,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조직적으로 무실화·무력화시키고 있는데 대해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차원, 셋째, 평화협정 체결주장과 관련하여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協商 戰術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基本方向 提示

작년 4월 28일 북한이 미국에 대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제의한 이후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동 행위들이 停戰協定 및 남북기본합의서 違反이라고만 지적하였을 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정착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더 攻勢的인 對北政策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綜合的인 構想을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남북한이 아직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관해 합의한 바가 없다.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한간의 공고한

평화상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청사진)을 밝히고 그러한 平和狀態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각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⁸⁰⁾

한편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하며, 이 점을 대내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南北當事者 解決原則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우선적으로 논의·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南北基本合意書 尊重原則(특히 停戰協定 維持·遵守原則)이다.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정부당국 차원에서 가장 고위급 수준의 대표들(총리급)이 체결하고 엄숙히 민족앞에 그 이행·실천을 약속한 최초의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내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간에 평화체제가 전환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漸進的·段階的 接近原則이다. 이것은 「선 평화체제 기반

80) 이와 관련, 북한의 부당한 선전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전협정 유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수세적·수구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정전협정 유지입장은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원칙이며 정신이다. 따라서 전혀 수세적이거나 수구적인 것이 아니며 그러한 비판은 부당한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平和狀態로 가기 위해 남북한이 각기 해야 할 일을 제시할 경우,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비판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성, 후 평화체제 전환(평화협정 체결 포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상호 平和意志가 확인된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듯이 먼저 남북한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평화체제 전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韓半島 平和의 實效性 保障原則이다. 평화체제 전환시에는 항구적이고도 실질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각기 제3국과 맺고 있는 기존의 정치·군사적 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이것은 각기 제3자와 체결한 기존의 동맹조약과 기타 善隣友好關係를 존중해야 한다는 소위 「既締結 條約의 尊重原則」을 말한다). 물론 남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합의할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 政府의 主導(initiative) 하에 주변국의 협조·지원을 얻어 국제적 보장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모색할 수도 있다.⁸¹⁾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인식이 없지 않다. 정부는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平和構築(평화체제 전환 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남조선혁명전략에 입

81) 諸成鎬, “평화체제 전환시 韓國이 견지해야 할 基本原則과 조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북관계속의 平和協定 제기, 그 對處方案」, pp. 131~133.

각한 北韓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 때문이지 우리의 평화지향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와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정을 체결하려 하기 때문이며, 또한 아직까지 南北平和協定 체결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2. 停戰機構 無力化에 대한 對應: 「평화협정 분위기 조성론」으로 逆攻

북한의 정전기구 무력화 기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平和體制 轉換을 위한 霧圍氣 造成論」을 정립하여 북한에 대해 逆攻을 가해야 한다.⁸²⁾

82) 최근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의 南北對話 의무이행과 관련, 소위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즉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측이 남한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은 ①국가보안법 철폐, ②조문불허 조치에 대한 사과, ③비전향장기수 석방 및 송환 등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이 남한을 설득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가 교착상태에 처하게 되자 「기본합의문 이행분위기 조성론」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4월 13일자 「로동신문」 논평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종결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조·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할 것이라고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해 나서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 지금의 정세는 조·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자면 우선 그에 맞는 분위기부터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중시해 주고 있다. 조·미 사이에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긴장이 격화되는 속에서 합의사항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조·미합의 이행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면 우리와 미국사이의 적대관계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만일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平和體制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건 내지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에 분위기 내지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혹시 似而非 平和는 몰라도 실질적이고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韓半島 平和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 내지 이를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일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을 몇가지만 제시하면 ①남북한의 상호 실체 인정·존중, ②북한의 남조선 혁명전략 포기과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③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불가침관련 조항들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통한 政治的·軍事的 信賴構築, ④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민족동질성 회복, ⑤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준수(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평화체제로의 轉換條件 외에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조건 내지 분위기는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준수라고 할 것이다. 법리상으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停戰協定體制의 성실한 이행·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함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정전협정체제를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면

원한다면 경수로문제와 관련한 남조선괴뢰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미 기본합의문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근하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 평화협정 체결이니 평화보장체계 수립이니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矛盾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停戰機構의 정상적 가동을 통해 停戰協定の 성실한 준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평화상태(체제)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른 북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분위기 조성론」을 북한측에 제시하여 북한이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기에 앞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반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北韓의 協商戰術 및 關聯措置에 대한 對應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 정전기구 무력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양한 전략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만반의 對備策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중 몇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우리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일방적 설치가 違法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만일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길 희망한다면, 먼저 군사정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停戰協定體制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기초 위에서 쌍방 사령관에게 동 문제에 관한 회담개최를 건의하고, 이후 쌍방사령관의 회의와 합의를 통해 기존의 정전관리기구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停戰管理를 담당할 기구로는 별도의 기구를 다시 설치하기 보

다는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체제 내에서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停戰管理機構 대체를 이룩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대미 유인책으로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中間措置, 예컨대 군사정전위원회 틀 밖에서 북·미 장성급 대화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해 올 경우 이를 단호히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정전체제 무력화 차원에서 북한이 앞으로 새로운 追加的 措置를 단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相應措置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대북 경수로지원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경우 다시 協商議題를 경수로 지원문제(북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험차원의 문제)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정치·군사적 문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양자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북한 核問題나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무관한 것이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겨냥하는 목표가 주한 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 동맹관계 약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聯邦制 統一을 실현하는 것인 이상, 앞으로 만일 북한이 경수로지원문제(북·미 기본합의문 이행문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 내지 전제조건화하려 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韓·美共助體制를 기초로 강력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VII. 結 論

북한 핵문제 대두 이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협상력 강화차원에서 수시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의 實體를 부정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直接 對話를 통한 關係改善을 모색하면서, 한·미관계 이간 및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약화를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거론하여 미국을 수세적 입장으로 몰아 넣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최대한의 經濟協力과 實利를 얻어내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동시에 이것을 김정일의 외교적 업적으로 부각·선전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하고,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質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구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전쟁의 歷史的 評價와 관련, 「정통정부」(평양)와 「비정통정부」(서울)간의 분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본전제 위에서 미군의 개입을 침략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해석하는 法的 文書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전략적 측면에서 향후 남북한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선반도의 문제는 민족내부문제」라는 구실하에 美國의 介入을 차단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의 군사력 및 안보태세

약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對南戰略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본래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은 바로 이러한 對南戰略 次元에서 시작된 것이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지금도 그러한 목표를 포기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기본적으로 方案의 문제가 아니라 政治的 意志의 문제로서, 진정한 平和共存의 의지가 있을 때에만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에 진정한 평화공존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또한 남북한이 平和體制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平和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 조건, 當事者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동 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실천할 때만이 비로소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平和體制 轉換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정전기구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정전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핵동결조치를 유지하고 韓半島 非核化를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정전협정의 法的 當事者이며 동시에 實質的 當事者인

남북한이 마땅히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북·미간에만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용인될 수 없고 또한 용인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남북한이 7천만 민족 구성원 앞에서 엄숙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명시된 當事者 解決原則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점을 對內外에 분명히 하면서, 남북한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南北對話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대해 제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가 解決의 실마리를 보일 경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남북대화 채널이 복원되도록 하는 한편, 대화재개시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북한측이 제의하는 對美 平和協定 체결 주장의 의도와 문제점, 허구성(특히 위장평화공세적 측면)을 명백히 지적하고 이를 對內外的으로 홍보함으로써 북한측의 이 문제에 관한 조속한 자세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근간으로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平和體制 전환시까지 정전협정 유지·준수원칙, 점진적·단계적 해결원칙과 한반도 평화의 실효성 보장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의 直接對話와 협의를 통해 平和體制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성급하게 서둘러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둘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韓庸燮
(국방대학원 교수)

< 목 차 >

- I. 序 論
- II.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南北韓의 立場
- III. 미국의 韓半島 平和體制에 대한 立場과 최근 미북 핵협상의 영향
- IV. 平和體制의 必要性和 內容
- V. 韓半島 平和體制 수립을 위한 戰略
- VI. 結 論

I. 序 論

20세기 말 세계의 탈냉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韓半島는 여전히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온 많은 요소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는 유지되어 왔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 온 유일한 국제법적 차원의 장치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停戰協定이다.¹⁾

* 본 논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방대학원이나 관련 정부기관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물론 세계의 脫冷戰 상황과 동구에서의 공산주의 몰락, 소련의 해체, 그리고 북한을 지원해 온 전략적 우방국의 상실 등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으로의 흡수 통일 우려를 불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한국정부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쳐 중국에는 평화통일로 이르고자 하는 단계적 통일 접근법의 일환으로 남북한간 高位級 會談을 개최하여 1992년 2월 19일 기본합의서를 合意·發效시켰다.

기본합의서의 발효는 한반도에서 박빙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한민족의 자발적인 탈냉전 시도중 일부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기본합의서 발효이후 대두된 북한의 核開發 문제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결국 핵문제는 미·북한간 회담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平和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가는 한국전쟁 이후 몇차례의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증명되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빚어진 危機狀況에서 새롭게 확인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합의한 기본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도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미국과의 핵회담 개시 이후 북한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전후 42년간 유지되어 온 停戰協定을 無實化시키기 위한 책동을 전개해 왔다. 1994년 4월 28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을 제의한 이래 군사

1) 전정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주최 학술세미나 「남북한 평화체계 확립의 여건조성」, 발표 논문, 1995. 6. 8), p. 4.

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군 대표단 철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및 중국의 군사정전위 대표단 소환 등 대미 平和協定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을 전개했다. 이어서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소위 기본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미·북 관계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활용, 對美 平和協定 체결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韓半島 平和體制와 관련한 남북한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근의 미·북한간 핵회담과 관계개선 노력을 감안하면서 한반도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한국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첫째, 韓半島 平和體制와 관련한 남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둘째, 최근 미·북한 핵협상 및 관계개선 동향과 한반도의 平和體制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셋째,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를 위한 평화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4가지 연구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II.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南北韓의 立場

1. 南韓의 立場

남한에서는 보통 평화를 전쟁이나 무력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라고 정의한다.²⁾ 미국의 일반적 개념정

의도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전쟁이나 기타 적대행위의 부재, 싸움과 반목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한국의 平和概念은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만약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自衛目的의 전쟁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적 접근방법을 추구한다. <표 1>에서 보듯이 현재는 남북한이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에 있고 停戰體制下에 있으므로 1992년 2월 19일 남북한간에 합의·발효된 기본합의서에 따라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다각적인 제분야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의 체제와 이념의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야 비로소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和解·協力の 단계라고 부른다.³⁾

<표 1> 통일단계별 기본규범과 국가형태

단 계	기본규범	국가형태
화해·협력	기본합의서	분단국가
평화체제	민족공동체헌장	남북연합
민족통일	통일헌법	통일국가

2) 「국어대사전」(서울: 삼성문화사, 1987), p. 1731; 이호재 편, 「한반도평화론」(서울: 법문사, 1986), p. 326.

3)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1992), pp. 30~32.

기본합의서는 화해·협력의 단계 다음에 오는 平和體制를 규율할 민족공동체현장이 마련될 때까지 남북간의 화해·군축·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平和體制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본합의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한반도에서 停戰協定을 준수해야 하며, 남북한 당사자가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까지는 停戰協定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기본합의서 제5조에 대하여 기본합의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를 남북한이 제대로 이행해 나가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는 창출되게 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현 停戰狀態가 국제연합과 북한·중국간의 상태이든 남과 북간의 상태이든 불문하고 장차의 평화상태는 「남과 북의」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란 현 停戰協定을 대체할 平和協定은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서 현 停戰協定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1953년 8월 28일 유엔 총회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남과 북을 당사자로 하고 관계 국가들이 보증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설명한다. 또한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란 남과 북을 당사자로 하고 상기 국가들이 보증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설사 평화협정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전 참

전국들이 보증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체제는 남북연합이 제도화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평화협정 이후에 공고한 平和共存 상태가 되어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현장을 만들어 내고 남북연합이 명실공히 법률적으로 출발되어야 平和體制가 갖추어 진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시간적으로 평화협정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남한은 평화협정체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대북한 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할 수 있고, UNC 해체시 북한이 남침할 경우 UN 차원의 개입 근거가 없어지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전용할 수 있는 주일 미군기지 몇 곳을 적시에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다. 즉 북한의 南侵 가능성이 확실히 없어질 때까지는 UNC와 정전체제가 가장 유효한 대처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의 停戰體制 무실화 책동과 對美 平和協定 공세에 대해 한국정부는 남북한을 주당사자로 하면서 미국·중국 등이 보증하는 「2+2」 平和體制 방식을 검토하는 융통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부는 북한이 북·미 평화협상의 공세를 강화하자 停戰體制 유지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한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선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으나,⁴⁾ 한국정부는 지금 현시점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쌍방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도 지키지 않고 있고 當事者原則을 버리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면서 대미 평

4) 「중앙일보」, 1995. 5. 24.

화협정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북한과 平和協定을 체결할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北韓의 立場

북한이 보는 평화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노예의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항구적 평화인데 전자는 제국주의자들의 착취계급에 의한 외부적 평화이고 후자는 제국주의의 殲滅·終熄과 세계혁명의 완수 이후에 오는 평화이다. 따라서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과 자기 계급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전쟁 같은 전쟁을 인정한다. 즉 이 두가지 전쟁은 正義의 戰爭으로서 正當한 戰爭이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⁵⁾

결국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외세가 배제되고 민족이 자주적인 입장에 설 때 平和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지고, 객관적으로 북한에게 힘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 사회주의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는 불가침협정을 맺어야 하고 미·북한간에는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平和協定의 내용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한

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633~35, 498~500, 이호재 편, 전계서 p. 328에서 재인용.

국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전범자처단 문제,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 선포, 미군철거 문제, 군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규모 군사 연습의 중지 제안을 비롯한 남한에서 미국의 무력증강 책동 및 무기반입책동 분쇄, 미군기지의 폐쇄를 해결함은 물론 韓美 相互 安保條約과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의 결정적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한반도의 自主化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들고 있다.⁶⁾ 이 기본 입장은 최근에 들어와 더욱 具體化되었는데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 UNC 해체, 휴전협정 파기, 평화에 입각한 군축평화원칙을 들고 있는데 駐韓美軍을 포함한 3단계에 걸친 10만여명의 병력감축, 무력증강 군비경쟁금지, 무기도입금지, 외국군 기지 폐쇄와 외국군 철수, 연합훈련의 금지,⁷⁾ 그리고 민족대 단결 원칙을 내세워 남한사회의 친북한 정권수립을 위한 민주혁명 등을 들고 있다.

결국 북한은 한반도의 武力赤化統一에 이르는 전략으로서 대미 평화협정을 주장한다. 대미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정세를 조성하고 마침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한반도에서 平和體制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6) 통일원, 「북한의 평화협정체제의 관련 자료집」(1994. 12), pp. 265~86 참조; 북한은 평화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서는 한국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전범자처단 문제,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선포, 미군철거 문제, 군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규모 군사연습의 중지제안을 비롯한 남한에 대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의 결정적 영향력 제거를 통한 자주화 달성을 들고 있다.

7) FBIS-EAS-90-172, September 6, 1990, 북한 연행목의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연설문 참조.

따라서 평화체제에 이르는 戰略으로서는 미·북한간 제네바 핵합의 이후 계속되는 각종 협상을 통해 북한·미국간 관계개선, 停戰體制의 무실화·무력화, 직접적인 대미 군사창구 개설, 남한 정부의 최대한 고립화 및 한·미관계의 이간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결국 대미 유화노선과 평화공세로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對美 平和保障體系의 수립을 내세워 平和協定에 이르는 몇가지 중간조치를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3. 小結論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개념·내용·접근전략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양측을 다 만족시킬 만한 방법은 어렵다. 그래도 최대공약수를 찾는다면 高位級會談 당시 기본합의서 제5조에 대한 협상태도를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다.

한국측은 고위급회담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평화체제 마련시까지 현 停戰協定을 준수해야 한다고 북한에 제안하였으며, 북한은 체제를 상태로 하자고 표현을 수정한 우리측의 절충안을 동의해 옴으로써 결국 기본합의서 제5조는 정전상태를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停戰協定을 준수한다고 합의했다. 이어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8조에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고 합의하였으며, 제19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한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상태에 대한 협의는 남한과 할 수 있지만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최근 대미 核協商과 관련하여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바라는 자주·평화의 조건은 남한과의 對話에서 창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북한식 통일의 저의를 포기하고 남과 북이 정전상태를 남북한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 합의정신을 따라서 남한과 평화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III. 미국의 韓半島 平和體制에 대한 입장과 최근 미·북 해협상의 영향

美國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平和體制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해 왔다. 즉 停戰協定體制는 南北 直接協商에 의거, 합법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存續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⁸⁾ 이에 따르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북 평화협

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4~95」, p. 261에 있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3항 참조. 본조항은 매년 SCM의 공동성명중 필수적인 사항이다.

정은 불가능하며, 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평화협정을 통해 韓半島 平和體制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당사자 원칙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동안의 핵협상 과정을 분석해보면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취할 입장이 예견되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사찰이나 제재나 하는 극한대결에서 벗어나 제3의 아이디어인 북한 核凍結과 경수로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이슈의 성격을 전환하여 제네바 회담을 타결지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군비통제조치중 신뢰구축보다는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군비감축 내지 폐기에 가깝다. 즉 構造的 軍縮에 가까운 조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남북한간에는 자연스럽게 핵무기 면에서는 군비감축 단계까지 진입하게 된 것이므로, 차후 在來式 軍備統制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즉 미국은 재래식 군비 통제 면에서도 북한과의 극한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북한보다 우세한 미국의 정치력, 외교력(미국의 대한국, 대일본 관계 포함), 경제력(우방의 경제력도 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폐기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核威脅 감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경제능력과 통일지향적 정책을 고려하여

한국이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북한의 核凍結을 이끌어 내었다. 한국정부는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네바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대북 경수로 지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民族共同 發展計劃의 일환으로 수용하였다.

원래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시작된 軍備統制會談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소련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국 보다 우세한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를 軍事會談에 연결시켜 소련의 軍備統制를 유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그 동안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韓半島에서 북한 보다 우세한 남한의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국제공조능력을 모두 활용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지위와 아울러 군사력 사용위협까지 활용하여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내었고 결국 타결에 이르렀다. 이를 달리 본다면 앞으로 미국이 韓半島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과 協商을 진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창출하기 위해 북한이 느끼고 있는 安保危機 의식도 적극 고려한 공동 및 協力安保概念을 적용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⁹⁾ 미국이 개별국가에 대하

9) Bjørn Møller, *Common Security and Nonoffensive Defense: A Nonrealist Perspective*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2), pp. 28~30;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Brookings

여 서면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언명해온 核先制不使用(NSA)의 보장을 북한측에 해주기로 한 점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해 준 점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지난 1년 반 끌어온 미·북한간의 협상을 보면, 미국은 탈냉전이후 북한이 코너에 몰려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막고, 코너에 몰릴수록 核武器 개발의 가능성만 키워줄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수궁하여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핵선제 불사용 서면보장까지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미국은 韓半島에서도 냉전시의 억지와 절대안보에서 벗어나 군비통제와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력적 개입을 통해 韓半島상에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美·北 제네바 合意이후 韓半島 平和問題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시사한 점이다. 제네바 합의 자체는 앞으로 2003년까지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漸進的 接近에 대한 시사는 두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대북한 협상을 시사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1994년 11월 헬기사건이후 북한이 停戰體制 무력화와 관련하여 美·北간 軍事 對話 선례를 남겼고, 또한 군사대화 채널의 개설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 대북 수교에

Occasional Paper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 7.

이르는 과정에서 대사고환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휴전선지역에 전진배치한 병력과 무기를 후방으로 철수시킬 것을 북한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軍備統制問題는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⁰⁾ 만약, 미국이 북한의 기습공격능력을 약화시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북한도 그에 대한 요구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및 남한 군사력의 후진 배치 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본격적인 軍備統制協商으로의 진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1994년 12월 공개된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북한간에 停戰協定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려할 경우 만약 한국을 배제하고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停戰協定의 조항(즉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협정위반의 조사와 협상 등)과 비슷한 平和協定의 조항을 이행할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지도록 한다면 한국도 이 平和協定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이것은 과거에 미국이 남북한간에 신뢰조성이 되지 않는 한 停戰體制의 무한정한 유지를 지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

10) 「동아일보」, 1994. 11. 5. 갈루치 미국무부 핵대사의 기자회견과 Testimony of Robert L. Gallucci, Ambassador at Large on the Agreed Framework with North Korea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cember 1, 1994.

11)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94-933 S, pp. 19~20.

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작년 말에 미군 헬기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리차드슨 미 하원의원, 허바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북한간에 政治會談으로 이를 해결했다. 동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당국자간 적절한 접촉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¹²⁾ 작년에 이어 지난 6월 3일부터 6일 까지 리차드슨 미 하원의원이 또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 고위장성급회담, 核協商 등 미·북한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만약 앞으로 정전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만약 DMZ 부근에서 停戰協定 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정치인의 방북과 북·미고위급회담의 채널 가동 등을 통한 不定期的인 대화채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미국의 連絡事務所가 평양에 개설되면 그 채널을 이용하여 위기 관리 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停戰體制 관리를 위한 북한과 채널문제, 보다 더 넓게는 韓半島 위기관리 체제를 지금부터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미국이 중동평화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PLO간의 양자회담에서 仲裁者로서

12) 통일원, 「주간북한동향」, 제209호(94. 12), pp. 25~31.

역할을 하였고, 또한 중동 지역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다시피 하여 平和體制를 구축해 나간 전문성과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다른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남북한간 平和協定을 둘러싼 대립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 平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平和協定 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핵협상 이후 마련된 여러가지 대 북한 대화 채널을 이용하여 停戰體制의 고수, 위기관리 체제의 고려, 그리고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북한 핵협상에서 얻은 성과를 재래식 군비통제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平和體制의 수립의 주도권은 한국정부에 맡기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V. 平和體制의 必要성과 內容

1. 平和體制 構築努力의 必要性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입장과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비교해 보면 한반도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平和體制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평화는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사실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停戰體制가 지켜온 것은 강력한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정책과 한·미연합방위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방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抑止力을 제고시켜 나가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방위에 의존하는 정책도 미국의 對韓半島 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가 좌우될 수 있고, 한국의 對美 安保依存으로 인하여 정치·경제분야의 대미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제약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대북한 직접 핵협상으로 한국정부가 남북한 문제에 있어 소외되어 온 경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탈냉전기의 安保環境은 냉전기의 양극체제하의 동맹과 핵억지력에 근거한 억지만으로는 한 국가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무한정한 韓半島 軍備競爭은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 경쟁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진시킨다. 특히 북한이 군사력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한에게 낙후된 지금, 상호 협력적 軍備統制 채널이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무리 억지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자포자기적인 군사도발이나 군사력이 녹슬기 전에 침략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방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남북한이 불신의 敵對關係를 청산하고 상호 국가의 안보이익을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할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작업을 平和體制의 구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체제라 함은 국제정치학의 이론상 체제론자(regime theorists)들이 주장하는 개념과 동일하다. 체제(regime)란 포괄적인 概念으로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설치된 기관,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된 원칙, 규범, 절차 그리고 규칙을 의미한다.¹³⁾ 體制理論은 미·소간의 적대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킨 이유를 상대방에 대하여 군비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비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국가정책을 결정할 경우 각기 고려했던 요소로서 상호 군비를 통제하는 체제의 존재 여부에서 들고 있다. 여기서 미·소간의 안보관계가 실현가능하고도 포괄적인 안보체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몇몇 安保問題에 있어서 광범위하고도 특정한 몇가지 합의된 규칙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나이 교수는 미·소 양국간의 安保體制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경쟁을 제한하는 문제, 핵무기와 관련된 사고와 위기발생시 위험을 감소시키는 문제, 核非擴散體制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핵무기의 균형을 수용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안보체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3) Joseph Nye, Jr., "Nuclear and U.S. 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Summer 1987), p. 391.

체제라는 개념은 국가간의 경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조직간에 합의한 규칙과 규율을 이행하도록 상호 감시하고 격려하는 절차를 고안하거나 기관을 설치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국가간에 기관을 설치하는 것의 중요성은 국제정치에서 게임이론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協力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유럽의 신뢰 및 안보구축조치, 신뢰구축조치, 유럽재래식 무기감축조치에 대한 감시체제는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또한 體制論者들은 적대적인 국가들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방관련 개념과 독트린에 대한 핵심적인 공동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상호 안보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法的·政治的인 타결의 프레임워크를 완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군사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협력적인 남북한관계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할 規範, 規則, 機關, 制度의 설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平和共存을 통해 상호 안보를 추구하고 꾸준히 협력해 갈 수 있는 평화체제의 구축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平和體制 構築의 原則

가. 當事者 原則

南北 平和體制 수립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임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 그러나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1991~1992년 사이에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이 견지되었으나, 1993~1995년 사이에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협상에 의해서 핵문제가 해결되었다.¹⁴⁾ 따라서 앞으로 平和體制 구축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견지하되 어떻게 미국의 역할을 일정부분 반영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미·북 군사당국간 접촉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서 북한의 停戰體制 무실화 책동을 차단할 정책대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段階別 接近原則

남북한간에는 상호불신의 골이 너무 크고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으므로 어느 한 순간에 법적으로 완벽한 체제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平和體制가 되었다고 보기보다는,¹⁵⁾ 평화체제 수립에 필수적인 몇가지의 조치를 합의하기 쉽고 이행하기 쉬운 것과 합의하기 어렵고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조치로 나누어 段階別 실천을 보장해 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타결과정에서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이

14)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주년 기념 워크샵회의록」(1994), pp. 10~11.

15) 김명기 교수는 平和體制에 이르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시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즉 획일강화형과 다른 하나는 단계적으로 평화를 강화시켜나가는 단계강화형이 있다고 한다. 김명기, “한국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논총」, 제31권 제2호(1986), pp. 36~37.

바로 이 停戰體制의 平和體制로 전환하는 조항이었음을 상기할 때, 平和體制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결보다는 협력, 이간보다는 협동을 선호하게 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한 순간에 합의서만 맺었다고 해서 平和共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합의사항을 실천해 가면서 신뢰가 구축되고 상대방과 더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할 때 보다 더 어려운 분야의 합의사항을 도출해내고 꾸준히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남북한간에 참된 平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다. 相互 檢證可能性의 原則

남북한간에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준수하는지 하지 않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참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평화공존 상태를 창조해 낼 수 있다. 북한의 2만 건이나 넘는 停戰協定 위반을 보면서, 그리고 停戰協定 위반사례를 검증하는 중립국 감시소조를 방해하는 사례를 보면서 철저한 검증절차 없는 합의서의 양산은 韓半島 평화정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平和體制 건설을 위한 조치들은 철저하게 검증가능한 절차의 합의와 함께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韓半島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여부를 검증할 절차의 합의 없이 비핵화 공동선언만 합의했다가 南北韓 核協商이 실패하고만 사례는 검증가능성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방법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라. 過去의 對決狀態로 돌아가지 않기(irreversibility) 原則

평화체제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결보다는 협력, 이간보다는 협동을 선호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므로 일단 한 단계에 합의하고 그것을 지켜왔다면 平和共存을 송두리째 깨는 행위가 없는 한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停戰協定 또는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이후 모든 것을 송두리째 깨어버리고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버린 사례이지만, 제네바 핵합의는 여러가지의 단계 단계마다 상호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각 단계를 지켜나가면 핵합의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즉 북한의 核武器 보유 같은 행위가 없는 한 핵합의가 없던 그 이전의 상태로 어느 일방이라도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3. 平和體制의 내용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平和體制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平和體制의 내용은 <표 2>에 요약한 바와 같이 단계별 접근 원칙을 살려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맨 아래에 가장 최종단계가 맨 위에 나타나 있다. 平和體制의 형식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만 설명하기로 한다.

가. 停戰協定の 준수

현재 유효한 停戰協定の 조항은 軍事分界線과 DMZ의 유지관리,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1991년 정전위 UNC측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 이후 군정위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최근에는 북한이 북·미 장성급 직접 접촉 채널을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停戰協定の 위반, 특히 정전이후 韓半島 내 병력과 무기의 증강을 금지한 13항 ‘ㄷ’ 과 ‘ㄹ’ 목의 위반여부를 사찰하고 감시할 中立國 監督委員會의 기능은 사실상 1955년 8월 16일 델레스 미국무장관의 선언으로 없어지게 되었다.¹⁶⁾

<표 2> 단계별 평화체제의 내용



16) U.S. Department of State, "Reply to Sweden and Switzerland on Korea Supervisory Commission," *Bulletin*, Vol. 32(1955), p. 429. 1957년 8월 13일 UN총회의 보고서는 공산측이 중감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감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은 700대나 넘는 공군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균형이 회복되고 공산측이 停戰協定을 지킬 의사를 보여줄 때까지 유엔사가 군비통제조항을 지킬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3631, August 13, 1957, p. 1(mimeo.).

이때로부터 중감위의 활동은 오직 군정위의 양측이 제공해오는 정보만 기록하는 기능에 국한되었다.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그리고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보면 停戰協定の 군사분계선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로 흡수되었고,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를 정전위 대표로 수용하거나 군사공동위원회가 停戰協定の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된다면 停戰協定 중 유효한 조항을 이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平和體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현재의 군사분계선과 DMZ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 停戰體制의 문제점은 북한의 2만여 違反事例에 대해 효과적 제재방안이 전혀 결여되어 있으며, 1991년 3월이래 군정위 회의가 전무한 실정이고 북측 中立國 監督委 철수 및 중국대표 철수, 그리고 최근 北韓의 DMZ내 停戰協定 違反事例 증가에도 효과적 대응방안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또한 현 정전체제하에서는 남북한간 군비경쟁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함이다.

나. 韓國戰爭의 責任糾明과 清算

평화체제로 이르기 위해서는 6.25 한국전쟁의 책임규명과 전쟁유제의 청산이 필수적이다. 북한도 平和協定の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한국전쟁의 책임자 처단 문제, 전쟁피해보상문제, 한국전쟁의 法的 종결문제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한다.¹⁷⁾ 한국전

쟁의 발발 책임 규명과 전범자 처벌 문제 등에 있어서 그동안의 역사적 연구와 최근 공개된 러시아의 외교문서 등 실증적 자료들은 김일성의 전쟁 주도에 관해 생생한 증언을 해주고 있으므로, 18) 김일성이 사망한 지금 북한으로서도 종래의 전범자처단 및 전쟁책임규명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停戰體制의 平和體制 전환에 있어 한국전의 책임, 전범자 처벌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다. 危機管理體制의 樹立¹⁹⁾

停戰協定은 6.25전쟁이후 남북관계를 관리해 온 유일한 법적 문서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남북한이 법적으로는 전사로 돌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정전협정이 무력화된다면 남북한의 평화 완충지대인 非武裝地帶에서 소규모의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오해와 오지로 인해

17)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현대국제법연구」(평양, 1988), pp. 158~74에서 발췌, 한국 통일원 발간, 「북한의 平和協定 제의 관련 자료집」(1994. 12)에서 재인용.

18) 김학준,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한국국제정치학회 주관 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5. 13).

19) 위기관 적대행위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반응할 시간이 짧으며, 중대한 국가목표나 이익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지를 정책결정자가 가지게 되며 이러한 국가간의 상호갈등속에서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Richard G. Head, et. al., *Crisis Resolution: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Korean Confrontation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p. 30; Glenn H.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i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 6.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危機管理體制의 수립이 시급하다.

작년 12월 발생한 미군헬기사건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軍停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한 군정위가 효과적인 위기관리 체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미군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때마침 방북중이던 리차드슨 미 하원의원과 그 이후 허바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의 방북을 통하여 헬기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軍事當局者間 접촉채널 유지에 대해 견해를 상호 교환하였고, 그 이후 금년 5월에 주한미군측은 휴전협정관련 懸案을 논의하기 위해 대북 장성급 접촉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²⁰⁾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 볼 때 한반도에서 危機管理體制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 정상간, 그리고 군사당국자간의 直通電話가 교환 설치될 필요가 있다.

1994년 6월 한반도 위기사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중재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가 해결될 실마리를 제공하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정상간 직접채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반도 危機事態 발생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남북한간 채널이 상설화되지 못하면 결국 또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 당사자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危機의 성공적 해결이 당사자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가질 수 없다. 차후 한반도의 위기사태 발생시에도 위기관리체제가

20) 「조선일보」, 1995. 5. 21.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상간 그리고 군사당국자간 하트라인의 개설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軍事的 安定化 措置

군사적 안정화 조치란 남북한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내 군사력을 상대방에 대한 武力行使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만약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를 가정할 때 상대방의 영토를 획득하지 못할 정도의 조치를 미리 취함으로써 정치지도자의 군사력 사용 동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²¹⁾ 이를 위해 상대방의 군사력의 使用, 配置, 運用, 建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결국 군비통제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軍備統制 방법중 첫째, 신뢰구축조치가 필요한데 남북한간에는 상호 군사정보 교환과 훈련의 통보 및 통제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信賴構築措置는 원래 상대편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쟁의도를 저지하는 목적하에 구상되었다. 신뢰구축의 논리를 북한의 군사에 적용해 본다면, 北韓軍은 기습전략으로 남한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신뢰구축조치는 상호 군사정보 교환을 통해 軍事力의 보유 및 배치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파악,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

21)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서로 다른 목적, 이익, 전략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가치중립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상호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군사적 안정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안병준, “남북군비통제의 쟁점과 전망,”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10권 (1993. 4), pp. 12~18.

관을 통하여 상대방의 전투대비태세의 정도와 훈련의 정형, 작전적 전술의 운용 등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현장사찰을 통하여 상대방 군사의 사기상태와 무기의 질적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奇襲攻擊의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 북한의 제2의 한국전 도발 가능성을 막는 방안으로서 군비제한조치가 있다. 군비제한조치는 現存의 군사력 보유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 사용과 배치, 운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이를 남북한 군사대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DMZ의 범위를 확정하여 북한이 전방배치한 過多兵力을 후방으로 철수시킴으로써 평시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쟁을 豫防하는 수단으로서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셋째, 북한의 과다한 병력과 무기를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군비축소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 비교하여 수적 우세에 있고 戰力評價指數로 파악을 해도 우위에 있다. 신뢰구축조치가 아무리 군사적 透明성과 豫測可能性을 증진시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보유한 공격 무기를 감축시키지 않는다면 공격할 의도가 약화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북한이 우리보다 많은 攻擊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무기의 결정적인 감축이전에 북한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마. 協力

사실상 한반도의 平和體制는 과거의 한국전 경험을 상기해야 할 뿐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 통일에 이르기전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또는 통일에 이르는 전환기에서 남북한간에 安保協力を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군비경쟁의 요인을 억제하고 共同利益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그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協力は 공동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상호조정 (mutual coordination)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協同(collaboration)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22)

여기서 協力的의 구체적인 예는 남북한 당국간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3국의 군사 합동훈련, 공동 假想敵에 대한 전략전술의 개발, 무기의 공동생산, 그리고 지역적 안보협력에의 참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軍事力을 유지하고 있는 실질 당사자간의 협력, 그리고 동북아지역 6자 협력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는 아세안 지역 포럼(ARF)에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22) Arthur A. Stei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Regimes in an Anarchic World," in Stephen D. Krans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27~28. Stein에 의하면 협력의 개념은 공동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정(coordination)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협동(collaboration)을 포함한다고 한다.

V. 韓半島 平和體制 수립을 위한 戰略

사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제 선의를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駐韓美軍의 핵무기의 무조건 철수와 한국정부의 선제적인 비핵선언으로 북한을 협상으로 유인하여 결국 북한 核問題는 미·북한간 협상으로 타결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재래식 부문에서 대결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우세한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북한이 과도한 군사력을 축소하면서 奇襲攻擊戰略과 그에 따른 병력배치를 수정하고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면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平和共存을 요청하고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김일성 사후 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싸여 있다. 그리고 리차드슨 미 하원의원에 의하면 북한은 아직도 강경 軍部勢力이 득세하고 있으며, 간간히 사안별로 강경파와 대화파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 여전히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한다. 결국 북한의 대남 대결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대미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개선에만 주력함으로써 體制危機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주변 안보상황과 북한의 國家能力은 종래 주장해 온 平和協定 체결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북한은 한·미연합방위체제로부터 받은 군사위협보다는 이제는 체제의 붕괴가능성과 남한과 점차 커지는 국가능력 자체에서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제의 붕괴 위협성에 대한 위협인식은 일찌기 독일통일 때부터 갖기 시작하여 남북한 고위급회담이나 핵통제공동위원회 회담 때에 吸收統一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國際社會의 압력이 고조되고 있을 때 미국이 북한체제를 압살하기 위해 국제적 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事例에서 북한의 체제붕괴 위협성에 대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북한은 과거 5년간 연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피폐상태에 있고 加重되는 식량난과 유류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외교적 고립화와 총체적인 체제위기의 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세계 각국에 대한 식량 원조 요구는 북한의 식량난이 위기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북한의 총체적 위기의식은 앞으로 韓半島의 安保問題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큰 제한요소가 남북한 모두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에 점차 커지는 경제력과 기술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북한의 威脅 認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것이다. 1994년 GNP의 통계상 북한은 남한의 14분의 1 또는 15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1975년에 남한의 GNP는 북한의 GNP를 비로소 앞서게 되었으나 國防費 總額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1983년도에 앞서게 되었다.²³⁾ 그러나 국방비중 실질투자비의 누계는 1996년도에 가

23) Charles Wolf, Jr., et al., *The Changing Balance: South and North Korean Capabilities for Long-term Military Competition*, The RAND Corporation, R-3305, December 1985, p. 43.

서야 한국이 북한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⁴⁾ GNP와 경제력, 그리고 기술능력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남한의 國防費 總額이 북한을 훨씬 앞설 수 밖에 없으며, 남한의 군사기술이 북한을 앞지를 것이란 예상을 하기 힘들진 않다. 따라서 북한은 21세기에 이르게 되면 在來式 軍事力에 있어서도 남한에 뒤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심각해지는 경제력과 기술능력의 격차는 북한에게 威脅要素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내부의 성향과 체제 내외의 취약성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내세운 지금까지의 平和協定 내용과 그에 이르기 위한 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 철수후 전쟁을 통한 韓半島의 적화통일은 달성불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對美 平和協定은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전술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은 최근 미국과 평화협정에 이르는 中間措置를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기 시작한 것 같다.²⁵⁾

북한의 새로운 정권은 객관적인 정치·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군량미 마저 민간지원으로 轉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군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가고 특히 근래 5년간 마이너스 경제

24) 「한국일보」, 1990. 2. 3. 국방비중 실질투자비의 누계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전력면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2000년대에 가능할 것이다.

25) 북한은 지난 1월 평양을 방문한 릴리 전 주한미대사 일행에게 平和協定에 이르는 중간조치를 전달한 바 있으며, 박상학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월 카트만드에서 개최된 UN 군축위원회 세미나에서 평화협정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성장으로 인해 군사비 규모도 매년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있다. 군비통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적대국의 군사비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는 현상을 보일 때 적대 관계에 있는 양국은 軍備統制協定에 이르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다.²⁶⁾ 이와 더불어 북한이 군대의 독립채산제나 군병력 규모와 방위산업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體制維持가 어려워져 가는 객관적인 상황은 韓半島에서 합의에 의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증대시키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탈냉전기의 북한의 對外協商 行態를 보면 과거의 경쟁과 무행동에서 부분적이거나 문제해결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²⁷⁾ 對美 核協商에서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경수로의 전환이 극명한 예이다.

그리고 한국의 객관적인 국력의 우세와 주변정세의 유리한 변화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전략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하다. 지난 2월 미국은 신 아세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는데 북한 핵문제 해결이후에도 韓半島를 포함한 아-태지역 현수준의 미군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북한 위협의 소멸후에도 긴밀한 韓·美 安保關係를 지속시키기로 하였다.²⁸⁾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협력적 개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노

26) Vally Koubi, "Military Buildups and Arms Control Agreemen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1994), pp. 605~20.

27) 김도태,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성과 변화"(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북한의 협상행태와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 논문. 1995년 5월 31일), p. 25.

28) U. 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북한은 체제위기를 벗어나고자 일본과도 쌀지원 요청을 포함한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는 금년 8월 조·소우호조약의 연장여부 협상에서 북한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의 수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인 주변국의 對韓半島 정책은 한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신정권이 등장하고 북한이 기본 군사정책을 변화시킬 기미를 보일 때까지 북한의 冷戰體制 무실화 책동과 대미 平和協定 공세에 대해서 조금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북한내 만약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라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단기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튼튼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안보정책의 보호하에서 韓國防衛의 韓國化를 착실히 진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결국 대북한 방어는 한국의 손으로 이루어질 때 북한은 韓半島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가 한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²⁹⁾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平和協定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면서 군사정전위 대표로 계속 한국장성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측은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한국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문제를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즉 주한미 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戰時作戰統制權을 한국의 합참의장이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군의 유사시 군사전략도 한국의 대통령의 정치·군사적 목적이 최우선이 되도록

29) 김달중, “남북한 관계와 한국군의 자주화방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2000년대를 향한 한국군의 발전방향」 세미나 논문, 1995. 6. 14), p. 20.

록 전략도 수정해나가야 하며, 한국의 월등한 對北 優位의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 우위가 군사력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북한도 남한에게 접을 먹고 평화공존체제로 나오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내에 戰時作戰權의 한국군으로 이양은 독자적 정보와 작전능력의 결여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4~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도록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동안 독자적 정보와 작전능력을 提高시키기 위해서 국방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야 할 것이다. 이 가시적인 국방비 증가는 북한에게 軍備統制 協商으로 유인하는 전략의 일환도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韓半島 平和體制 수립을 위한 전략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의 非核化를 달성한다. 동시에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작전과 정보능력의 현대화·자주화를 달성해 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는다. 물론 이 기간 중에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공고하게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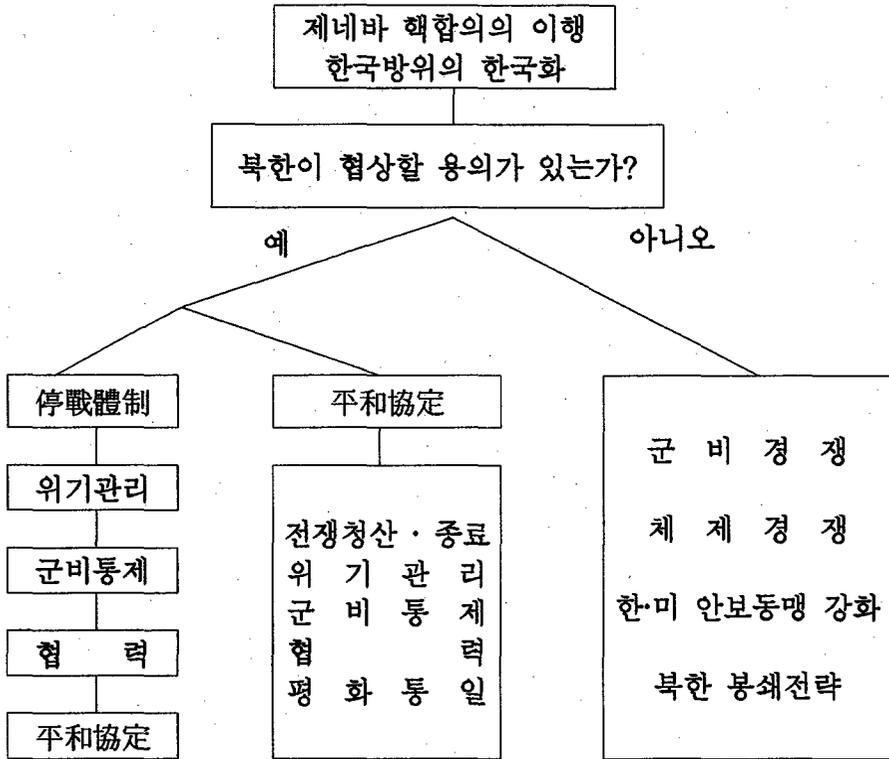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대한국 협상의지를 타진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과 당사자 원칙에 의거하여 협상할 의사를 보이면 <표 3>에서 '예' 라는 루트를 따라간다. 북한이 한국과 일거에 平和協定을 체결하기를 원하면, 「平和協定」란 속에 있는 한국전쟁 청산·종료, 위기관리, 군비통제, 협력, 평화통일원칙에 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만약 북한이 대미 平和協定 요구 자체는 포기하였으나 중간조

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과도 평화체제에 관한 타협의사를 보일 경우에는 「停戰體制」란에 있는 바대로 정전체제의 일부 유효조항을 지키면서 위기관리체제의 수립, 군사적 안정화조치를 포함한 군비통제조치의 합의, 그리고 協力を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한다. 협력의 단계에 가서 지금까지의 평화구축 노력을 완결짓는 형태로 平和協定을 체결한다. 이 경우에는 停戰體制 자체는 유지되지만, 위기관리, 군비통제, 그리고 협력의 단계가 마치 제네바 핵합의처럼 장차 8개년에 걸쳐 달성되도록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인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합의해도 좋고, 안되면 한단계가 완수되면 다음 단계를 합의하고 이행해 나가는 점진적인 接近方式을 취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한국을 끝내 平和協定의 유효한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배제시키면서 미국과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은 과감한 國防費 투자를 통해서 대북한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주변국과 軍事外交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면에서도 북한을 훨씬 능가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을 더욱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 한반도 平和體制 戰略



VI. 結 論

사실 韓半島의 平和體制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제 선의를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핵무기의 무조건 철수와 한국정부의 선제적인 非核宣言으로 북한을 협상으로 유인하여 결국 북한 핵문제는 미·북한간 협상으로 타결에 이

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재래식 부문에서 대결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우세한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북한이 과도한 軍事力을 축소하면서 기습공격전략과 그에 따른 병력배치를 수정하고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면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平和共存을 요청하고 나와야 한다.

한국의 객관적인 국력의 우세와 주변정세의 유리한 변화를 볼 때, 한국정부는 북한의 신정권이 등장하고 북한이 기본 군사정책을 변화시킬 기미를 보일 때까지 북한의 停戰體制 무실화 책동과 대미 平和協定 공세에 대해서 하나도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에게 우세한 환경과 북한이 가진 체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韓半島 平和體制 수립전략의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平和體制 구축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즉 당사자 원칙, 단계별 접근 원칙, 상호검증가능성의 원칙,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원칙을 살려나가면서 평화체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停戰協定の 준수, 한국전쟁 책임의 규명과 청산, 위기관리체제의 수립, 군사적 안정화 조치, 그리고 협력체제의 구축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韓半島 平和體制 수립을 위한 전략은 시나리오 베이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非核化를 달성하고,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 작전과 정보능력의 현대화·자주화를 달성해 가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韓國防衛의 실질적 당사자가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대한민국 협상의지를 타진하여 북한이 일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면 본고에 제시된 평화체제의 내용을 다 담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만약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 요구 자체는 포기하였으나 중간조치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과도 평화체제에 관한 타협의사를 보일 경우에는 停戰體制의 일부 유효조항을 지키면서 위기관리체제의 수립, 군사적 안정화조치를 포함한 군비통제조치의 합의, 그리고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한국을 끝내 平和協定の 유효한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배제시키면서 미국과 平和協定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은 과감한 국방비 투자를 통해서 대북한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韓·美同盟을 더욱 강화하고 주변국과 軍事外交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도 북한을 훨씬 능가하도록 하여 북한이 武力行使를 통해서만 반드시 패망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게 되면 북한은 비로소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II. 綜合 討論

- 司會: 李相禹(서강대 교수)
- 討論: 金明基(명지대 교수)
都俊鎬(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安秉俊(연세대 교수)
朴英圭(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빈 면

綜 合 討 論

司會者: 李相禹 (서강대 교수)

討論者: 金明基 (명지대 교수)

都俊鎬 (조선일보 부국장)

安秉俊 (연세대 교수)

朴英圭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이상우: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명기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기: 명지대학의 김명기입니다. 두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면 제박사님 논문에 유엔군은 支援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작전지휘권이 이양되었고,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아 전쟁을 수행한 상태에서 미군을 支援軍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보충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찬반론이 존재하는데 그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론의 논리는 첫째, 복잡한 當事者問題를 정리한다. 두번째로 휴전

협정의 결함을 보완한다. 세번째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 휴전상태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도 통고를 전제로 하면 적대행위 자체는 合法的인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체제는 이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敵과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할 때, 평화체제는 통일기반을 조성하여 和解·協力 단계에서 共存·共榮의 단계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론의 논거는 첫째, UNC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것, 둘째, 작전지휘권의 還收를 전제로 한다는 것, 셋째, 北進의 법적인 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1950년 10월 7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연합군은 北進의 권리를 취득했으나 평화협정 체결시 북진론의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당사자 문제에 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당사자 문제에 관해서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 제60항에는 외국군의 철수 등 평화회복을 위해서 政治會談을 3개월내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관계정부의 대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서 政治會談의 당사자를 유엔16개 참전국과 대한민국, 북측에는 북한과 중공, 그리고 원한다면 소련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1954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유엔정치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休戰協定の 당사자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보면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 결의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합의서 제5조에 근거하여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것을 참전국들이 保證하는 평화체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엔총회나 안보리 결의, 특히 1953년 6월 8일의 결의에 근거해서 당사자문제는 찾아야 되고 누가 당사자가 되느냐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보완책으로 DMZ에 평화감시군을 파견하고 평화감시군으로는 PKO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 봅직 합니다. 이 경우 주변4강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시아의 群小國들로 PKO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 決定要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군이 한국군에 작전지휘권을 移讓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미군이 더 이상 작전지휘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여부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의 반대로 얻기 어렵다고 했을 때, 1950년 10월 7일의 결의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공격의 법적 근거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정책 수단중 이러한 채찍을 버리고 당근만을 취하게 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미국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전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現狀의 平和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統一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두개의 만족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와 정책결정자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우: 감사합니다. 김명기 교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補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조선일보 도준호 부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도준호: 두분의 발표를 듣고 소감을 말하자면 平和協定의 논리 구성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분의 발표 내용은 상당 부분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論理的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과연 駐韓美軍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현재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평화협정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소위 當事者原則의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나 기본합의서에 의거해서나 당사자원칙이 남북간에는 필요하나 현실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셋째, 段階的 接近의 원칙이 미·북간 긴밀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평화협

정 체결문제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와 미국이 어떻게 認識을 共有하고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적으로 평화협정은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장성급 접촉 의사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한국배제전략을 묵인하며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 이야기를 3가지만 하자면 첫째, 우리의 對北政策이 미국과 북한 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번 핵협상에서도 한국형, 한국중심의 역할, 과거사찰이라는 원칙을 對內政治用으로 사용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의 정치게임, 그리고 미국과의 정치게임에서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과연 주체적인 외교안보정책과 전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냉전시대의 것을 踏襲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韓·美安保의 공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접근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식의, 말하자면 외교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한반도문제의 國際性에 관한 것입니다. 즉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한반도문제는 분단 당시에 못지 않게 국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단 당시 보다는 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國際化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판단하에 현실적인 代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調律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화체제

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원칙 보다는 「2+2」 형식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오히려 우리정부가 우리에게 實益이 되는 방향으로 더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 도국장님께서 핵심적인 문제를 직설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韓·美特殊關係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착각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미특수관계는 냉전시대에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는 공히 兩國關係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남북한이 미국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韓·美特殊關係를 假定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세 번째로 안병준 교수님의 토론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준: 平和協定問題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율적인 평화체제, 전쟁억지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하고서 정책을 추진해야 當事者問題나 한·미관계도 잘 전개될 것입니다.

최근 콜라툼프르 경수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은 첫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하고 추구하면 미국 역시 우리를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체제야말로 우리의 安保·生存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확고히 固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와 미국의 정책상 乖離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냉전기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優先順位는 글로벌전

략, 그 다음이 동아시아전략, 마지막이 국지인 한반도 전략입니다. 우리에게서 북한 핵의 抑止가 최우선인 것과 반대입니다. 한미간의 戰略上 乖離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당연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우리의 지역전략이 일치하는 것에 주목하여 地域的 接近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은 금년 2월 동아시아 전략보고를 통해 향후 10년동안 駐韓美軍을 유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의 霸權主義를 견제하여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미국을 불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우리의 이익과 일치시킬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南北關係에 관한 한 우리의 허락없이 절대 북한과 직접협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핵문제와 平和體制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事前合意를 해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콜라롬프르는 제네바 보다 더 낫은 결과라고 보이지만 마지막에 긴급훈령을 내리는 것 따위는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사전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대 정부간의 事前 協議와 미국의 의회·언론 등 公衆중에서 우리의 편을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기본합의서 5조로 돌아와 當事者原則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체제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너무 反應的(reactive)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정책결정체제의 완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우: 복잡한 문제를 매우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번째로 박영규 박사님의 토론을 들겠습니다.

박영규: 기본적으로 두분 발표내용에 동의하기 때문에 간단한 코멘트와 보충·설명 성격의 질문 몇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우려해야 될 것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死文化·無力化 시키는 것, 즉 정전체제의 瓦解 자체보다도 우리사회 내부에서 국론분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앞서 세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韓·美共助體制를 여하히 維持·強化할 것인가가 우리가 당면한 긴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平和協定과 관련하여 대부분 남북 당사자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회의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다른 방안을 논의·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내에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북한이 곧 변할 것으로 전제하고 對北政策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한 속단은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平和體制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국론분열 등이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들이고 이러한 국론분열 때문에 對北·對美 協商力의 弱化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미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核協商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한·미간 대북인식 및 정책의 이견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한·미 共助體制를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와해기도 자체를 우려한다거나 북한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국론통일과 韓·美 共助體制 유지에 역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몇가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첫째, 제박사님의 논문에서 지적된 停戰體制 瓦解를 위한 북한의 追加的 措置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용섭 교수님이 언급한 것 중에서 북한이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 제안한 中間措置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의 입장에 관한 것인데 한교수님은 부정적인 톤으로 발표를 하셨지만 군비통제 중재 등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平和體制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지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한교수님은 그 것을 정전협정을 修正·補完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대처하자는 의미인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停戰協定の 수정·보완이라면 제 61항에 의해서 쌍방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의 相關關係에 관한 것입니다.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平和狀態(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간의 힘의 균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전쟁당사자간 平和協定 체결이 없이 적대관계를 개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교수님이 제시한 협력단계에 이르면 남북한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 가상의 적에 대한 전략전술의 개발, 무기공동생산 등의 협력 정도가 아니라 同盟 이상의 단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교수님의 두가지 시나리오 모두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여러가지로 토론할 여지가 많은 문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蛇足を 단다면 박박사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 40년간 한반도에 平和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휴전협정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 하는 힘의 均衡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힘이라고 하

지만 그 요소로 싸우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관심 세가지를 곱한 것입니다. 미국은 冷戰時代에는 한반도에서 이 세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 세가지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전쟁을 抑止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요소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意志입니다. 우리의 국론이 분열이 되면 의지가 0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다는 것이 박박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상 4분의 지명토론자께서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또 問題를 제기해주셨고, 보완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플로어 토론을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 發表者 두분에게 답변과 보충·설명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장인섭: 한용섭 교수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최근 엔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쓴 글중에서 'dual-containment'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걸프전 이후에 미국이 이란과 이라크를 동시에 봉쇄하는 戰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란이 너무 커지니까 이라크를 동원해 이란을 봉쇄했는데 이라크가 너무 커져 다시 팽창하려고 하니까 걸프전을 통해서 이번엔 이라크를 封鎖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련의 존재 때문에 한쪽을 봉쇄하는데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이란과 이라크 양측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교정책에 하나의 資産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정책 입안자의 이러한 착상이 꼭 중동에만 적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우 교수께서 최근에 쓴 글 중에도 “이

제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共助體制를 항상 주장하지만 이제는 남북이 공히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꼴이 되었는데, 한용섭 교수님의 발표에서 “한·미안 보동맹의 강화를 통한 북한 봉쇄전략을 밀고 가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藥效가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박상민(송파구 가락동): 우리는 現時點에 와서 우리나라가 분단 되게 된 원인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카이로와 알타회담을 준비하는 열강 수뇌부의 구상은 일본은 한나라의 영향하에 들어가지도 좋지만 한반도는 미·중·소 공동 관리하에 들어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단 50년이 지난 지금 結者解之의 원리에 의해서 분단을 초래한 周邊 列強들이 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열강에다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엔과 인연이 깊은데 38선쪽에 유엔이 들어와서 평화구를 만들고 이곳을 남북이 교류하는 하나의 統一의 敎育場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열강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그런 각도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향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검토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우: 발표자들께서 답변과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성호: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이 駐韓美軍의 철수만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이 관계개선카드 차원에서 實利를 챙기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이 駐韓美軍 철수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 후 남한의 공산화·연방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잠시 주머니에 넣었다고 同 問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북·미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국가가 없을 뿐더러 미국의 입장도 전쟁책임과 배상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북·미간의 전쟁이라는 입장을 수용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미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北韓 核問題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로서 남북당사자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國際性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외세의 개입을 가속화시킬 국제화를 우리 스스로 촉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平和協定 問題는 UN군 사령부로 떠 넘기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점을 간파하여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停戰體制 와해 기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로서는 정전협정의 폐기선언, 비무장지대 군사력 증강 및 북방한계선 침투를 통한 위기감 고조 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체제의 모색이전에 停戰協定의 준수가 우선이라는 원칙으로부터 때로는 북한의 전략을 무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한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이행·실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주변 강대국의 역할은 停

戰協定の 위반에 대한 지탄과 압력의 행사 등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유엔군은 범위반자를 몰아내고 원상회복을 위해 참전했다는 점에서 전쟁 당사자라기 보다는 支援軍의 개념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용섭: 네분 토론하신 선생님들은 저희들보다 연배도 위고 그동안의 專門的인 연구를 많이 하신분이라 그런지 국민들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모두 포괄했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한 북한이 미국과 너무 앞서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 그리고 當事者問題를 남북한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넓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 토론된 내용이 사실 貸借對照表로 보면 차변과 대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의 안보·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平和의 問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냉전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의 억지력 및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존해 가지고 북한의 남침의사를 억지해 왔습니다. 즉 停戰協定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의 우위에 북한의 南侵意思를 억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핵협상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북한에게 핵불사용 및 핵불위협보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核抑止力은 더 이상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래식군사력으로 억지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Win-Win 전략이라는 2개 전장 동시 승리 전략에 의하면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냉전시대 때보다 더한 규모의 軍事力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분간 불변요소로 우리에게 힘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의 軍事作戰權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2천년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고 또 2천년도가 지나면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경제·외교·정치력을 안보력에 投射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북한도 우리에게 겁을 집어 먹고 當事者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경제능력이 발전해도 북한은 겁을 먹지 않고 협상에 나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段階別 接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전체제중에서 아직도 유효한 조항이 몇개 있고 사문화되어 버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25이후에 남북한 당국들이 새로 증강하는 兵力이라든지 무기들은 들여올 때에 모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死文化되었습니다. 반면 DMZ를 관리하는 문제는 아직도 有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停戰協定을 체결하면서 장기적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평화체제를 모색할 때는 장기적 비전하에 각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계적 접근을 하면서도 危機管理體制 같은 문제는 긴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제안할 수 있는 中間措置로는 군비통제, 군사당국자 채널유지, 미·북 불가침조약, UNC해체 제의 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平和協定이 아닌 한 협상의 용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과의 相關關係에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군비증강과 연합방위체제에 근거하여 북한을 封鎖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자살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적 접근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앞뒤로 둔 것은 평화협정이 시작될 수도 있고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이냐는 오로지 북한에게 달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우: 북한이 미국과의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하나의 조선이라는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은 이러한 논리를 客觀化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병준: 평화체제의 모델을 「2+2」로 하자는 도준호 부국장님의 제안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이 참여하면 북한과 共同作戰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관계 개선으로 연락 사무소가 개설되고 중유가 제공되고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南北韓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상도 나이브한 것입니다. 미국은 現狀維持에 주안점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장치는 남북한을 當事者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안된다면 3자회담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협상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 미국도 결코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단지 한국의 눈치만을 보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牽制하려는 차원에서 東아시아에 미군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우: 안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요점 3가지, 즉 남북관계에서 중국을 仲介者로 활용한다는 발상의 어리석음, 그리고 미국을 調整者로 보는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고도 강도 높게 제시하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세가지 점에 동의합니다.

도준호: 현실적 각도에서 보면 미국, 한국, 북한 모두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對美外交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망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段階論을 우려하는 이유는 정전체제의 무력화가 진행되면서 장성급 접촉을 거쳐 平和協定 체결 직전까지 긴급히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북한 核問題에서 처럼 한국은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우: 남북통일 전에 해야할 일은 남한내의 통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認識의 統一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을 모으는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의 토론은 이런 機會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족통일연구원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附錄> 會議日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 李秉龍(민족통일연구원 원장)
- 14:05~15:05 主題發表
 - 司會: 李相禹(서강대 교수)
 - 發表: 諸成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
- 내용, 의도 및 문제점 -
韓庸燮(국방대학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7:00 討論: 金明基(명지대 교수)
都俊鎬(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安秉俊(연세대 교수)
朴英圭(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 17:00~18:00 다과회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세미나시리즈 95-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6月 日

發行日 1995年 6月 日
